장:(1000)일반행정비 관:(1100)입법및선거관계 항:(1110)지방의회운영 세항:(1111)의정운영 세세항:(110)인건비 [남구본청][단위:천원]

과목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1000 일반행정비		33,464,358	32,811,392	652,966	[국 76,161 균 0 기 0] [시 255,702 구 33,132,495]
1100 입법및선거관계		1,690,864	1,685,225	5,639	
1110 지방의회운영		1,678,194	1,685,225	△7,031	
1111 의정운영		968,427	975,799	△7,372	
100 경상예산		928,877	940,929	△12,052	
110 인건비		754,957	767,009	△12,052	
	101 인건비	754,957	767,009	△12,052	
		450,490	461,513	△11,023	01 기본급 ◎봉급 O국장(연봉) 61,000,000원-기정58,423,000원 = 2,577 O5급(30호) 2,908,900원x2명x12월-기정68,235,000원 = 1,579 O6급(25호) 2,413,800원x3명x12월-기정85,529,000원 = 1,368 O7급(12호) 1,685,300원x4명x12월-기정86,448,000원 = △5,553

과목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8급(6호) 1,192,200원x1명x12월-기정14,081,000원 = 226 ○기능7급(22호) 2,095,000원x1명x12월-기정24,744,000원 = 396 ○기능8급(13호) 1,555,300원x3명x12월-기정18,370,000원 = 37,621 ○기능9급(9호) 1,219,600원x2명x12월-기정62,012,000원 = △32,741 ◎정근수당 362,314,000원x0.9/12-기정26,957,000원 = 217 ◎처우개선비 0원-417,842,000원x4% = △16,713
		117,462	119,000	△1,538	02 수당 ◎정액수당 ○대우공무원수당 - 기능9급 0원-기정1,538,000원 = △1,538
		20,427	19,918	509	09 일용인부임 ◎부속실 업무보조원

과목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기본급	28,500원x1명x246일-기정6,796,000원	=	215
					○상여금	7,011,000원x4/12월-기정2,266,000원	=	71
					○유급휴일수당	32,768원x1명x119일-기정3,706,000원	=	194
					○연차수당	32,768원x1명x10일-기정317,000원	=	11
					○가계보조비	7,011,000원x1/12월-기정567,000원	=	18
200 사업예산		39,250	34,570	4,680				
220 자체사업		39,250	34,570	4,680				
	405 자산취득비	17,380	12,700	4,680				
		17,380	12,700	4,68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위원회실 OA 캐비넷 구입	270,000원x4개	=	1,080
					◎카메라 렌즈 및 부속품 구입	3,300,000원	=	3,300
					◎국장실 의자 구입	300,000원x1개	=	300

과목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1113 의정활동		622,674	622,333	341	
100 경상예산		622,674	622,333	341	
120 경상적경비		622,674	622,333	341	
	205 의회비	622,674	622,333	341	
		5,610	5,269	341	09 의원국민건강보험금 ◎국민건강보험 기관부담금 235,200,000원x2.385%-기정5,269,000원 = 341

장:(1000)일반행정비 관:(1100)입법및선거관계 항:(1120)선거관리 세항:(1121)선거관리 세세항:(420)기타 [남구본청][단위:천원]

과목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1120 선거관리		12,670	0	12,670	
1121 선거관리		12,670	0	12,670	
400 예비비등		12,670	0	12,670	
420 기타		12,670	0	12,670	
	802 반환금기타	12,670	0	12,670	
		12,670	0	12,670	02 시·도비보조금반환금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비 사용잔액 12,669,040원 = 12,670

과목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1200 일반행정비		31,773,494	31,126,167	647,327	[국 76,161 균 0 기 0] [시 255,702 구 31,441,631]
1210 기획감사		17,874,862	17,733,152	141,710	[국 0 균 0 기 0] [시 53,588 구 17,821,274]
1211 기획관리		264,052	256,361	7,691	
100 경상예산		253,252	256,361	△3,109	
110 인건비		88,116	91,225	△3,109	
	101 인건비	88,116	91,225	△3,109	
		88,116	91,225	△3,109	02 수당 ◎시간외근무수당 88,116,000원-기정91,225,000원 = △3,109
200 사업예산		10,800	0	10,800	
220 자체사업		10,800	0	10,800	
	207 연구개발비	10,800	0	10,800	
		10,800	0	10,800	01 용역비 ◎정책자문단 자문위원 연구활동비 400,000원x27명 = 10,800

과목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1212 예산운영		17,065,152	16,937,065	128,087	
100 경상예산		16,115,152	15,987,065	128,087	
110 인건비		15,013,642	14,895,555	118,087	
	101 인건비	15,013,642	14,895,555	118,087	
		9,477,558	9,677,502	△199,944	01 기본급 ◎봉급 O구청장(연봉) 73,995,000원x1명-기정72,903,000원 = 1,092 O부구청장(연봉) 66,233,000원x1명-기정65,286,000원 = 947 O국장(연봉) 59,270,000원x3명-기정176,931,000원 = 879 O5급(25호) 2,792,500원x18명x12월-기정560,694,000원 = 42,486 O6급(22호) 2,321,200원x75명x12월-기정2,056,140,000원 = 32,940 O7급(14호) 1,783,900원x105명x12월-기정2,212,308,000원 = 35,406

과목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8급(9호) 1,361,400원x104명x12월-기정1,704,480,000원 = △5,452 ○9급(4호) 956,700원x35명x12월-기정395,472,000원 = 6,342 ○기능6급(21호) 2,286,800원x3명x12월-기정81,029,000원 = 1,296 ○기능7급(21호) 2,062,700원x6명x12월-기정146,175,000원 = 2,340 ○기능8급(17호) 1,718,100원x15명x12월-기정304,380,000원 = 4,878 ○기능9급(13호) 1,398,400원x31명x12월-기정512,021,000원 = 8,184 ○기능10급(8호) 1,059,000원x33명x12월-기정412,751,000원 = 6,613 ◎정근수당 8,520,481,000원x0.9/12-기정628,909,000원 = 10,128 ◎처우개선비 0원-기정348,023,000원 = △348,023
		1,475,195	1,195,232	279,963	02 수당 ◎정액수당

과목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자녀학비보조수당 - 중학교 49,620원x70명x4회-기정15,418,000원 = △1,524 - 고등학교 401,040원x75명x4회-기정116,865,000원 = 3,447 ○육아휴직수당 500,000원x10명x12월-기정48,000,000원 = 12,000 ○명예퇴직수당(6급23호봉 기준) 2,353,500원x1/2x72개월x4명-기정72,864,000원 = 266,040
		852,049	838,545	13,504	05 명절휴가비 ◎명절휴가비 8,520,481,000원x1.2/12-기정838,545,000원 = 13,504
		1,420,081	1,397,575	22,506	06 가계지원비 ◎가계지원비 8,520,481,000원x2/12-기정1,397,575,000원 = 22,506
		44,421	42,363	2,058	08 기타직보수 ◎고래박물관 계약직 공무원 ○연봉 32,262,000원x1명-기정30,204,000원 = 2,058

장:(1000)일반행정비 관:(1200)일반행정비 항:(1210)기획감사 세항:(1212)예산운영 세세항:(120)경상적경비 [남구본청][단위:천원]

과목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120 경상적경비		1,101,510	1,091,510	10,000	
	201 일반운영비	120,450	110,450	10,000	
		120,450	110,450	10,000	01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O주요시책 업무추진(기관공통) 24,000,000원-기정14,000,000원 = 10,000

과목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1213 의회법무관리		144,170	146,420	△2,250	
100 경상예산		143,820	146,070	△2,250	
120 경상적경비		143,820	146,070	△2,250	
	201 일반운영비	124,890	125,340	△450	
		124,890	125,340	△450	01 일반운영비 ◎<급량비> ○의회법무관리 업무추진 1,950,000원-기정2,400,000원 = △450
	202 여비	10,530	12,330	△1,800	
		10,530	12,330	△1,800	01 국내여비 ◎<관내여비> ○의회법무.통계관리 업무추진 7,800,000원-기정9,600,000원 = △1,800

과목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1214 통계관리		126,443	118,261	8,182	[국 0 균 0 기 0] [시 53,588 구 72,855]
400 예비비등		8,182	0	8,182	
420 기타		8,182	0	8,182	
	802 반환금기타	8,182	0	8,182	
		8,182	0	8,182	02 시・도비보조금반환금 ◎사회지표조사 및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사용잔액 8,181,065원 = 8,182

과목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1220 내무행정		8,361,031	8,083,461	277,570	
1221 총무관리		1,056,177	1,043,361	12,816	
100 경상예산		964,737	951,921	12,816	
110 인건비		329,417	321,101	8,316	
	101 인건비	329,417	321,101	8,316	
		180,424	174,205	6,219	02 수당 ◎시간외근무수당 151,350,000원-기정145,131,000원 = 6,219
		117,091	115,520	1,571	08 기타직보수 ◎청원경찰 O급여 1,727,400원x3명x12월-기정61,056,000원 = 1,131 O정근수당 62,187,000원x0.9/12-기정4,580,000원 = 85 O명절휴가비 62,187,000원x1.2/12-기정6,106,000원 = 113 O가계지원비

과목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62,187,000원x2/12-기정10,176,000원 = 189
					○연가보상비 62,187,000원x17/360-기정2,884,000원 = 53
		20,153	19,627	526	09 일용인부임 ◎부속실 업무보조원 ○기본급 28,500원x1명x246일-기정6,796,000원 = 215 ○상여금 7,068,000원x4/12-기정2,266,000원 = 90 ○가계보조비 7,011,000원x1/12-기정567,000원 = 18 ○유급휴일수당 31,784원x1명x119일-기정3,591,000원 = 192 ○연차수당 31,784원x1명x10일-기정307,000원 = 11
120 경상적경비		635,320	630,820	4,500	
	201 일반운영비	254,286	253,386	900	
		251,036	250,136	900	01 일반운영비 ◎<급량비> ○총무관리 업무추진

과목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 직원(2명) 7,500,000원-기정6,600,000원 = 900
	202 여비	110,294	106,694	3,600	
		57,534	53,934	3,600	01 국내여비 ◎<관내여비> O총무관리 업무추진 - 직원(2명) 32,400,000원-기정28,800,000원 = 3,600

과목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1222 인사관리		5,087,434	4,867,569	219,865	
100 경상예산		4,852,367	4,632,502	219,865	
120 경상적경비		4,785,550	4,565,685	219,865	
	201 일반운영비	108,450	95,670	12,780	
		108,450	95,670	12,780	01 일반운영비 ◎<위탁교육비> O울산대학교 위탁교육 부담금(1명) - 중견관리자 양성과정 37,500,000원-기정30,000,000원 = 7,500 O중앙단위교육기관 교육부담금(3명) - 5급승진자과정(2월) 7,080,000원-기정1,800,000원 = 5,280
	202 여비	302,620	209,320	93,300	
		112,620	99,320	13,300	01 국내여비 ◎교육여비

과목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울산대학교 위탁교육 여비 - 중견관리자 양성과정 12,500,000원-기정10,000,000원 = 2,500 ○중앙단위교육기관 교육여비 - 5급 승진자과정(2월) 15,600,000원-기정4,800,000원 = 10,800
		190,000	110,000	80,000	03 국외여비 ◎울산대학교 장기교육위탁자 해외연수 경비(1명) 25,000,000원-기정20,000,000원 = 5,000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150,000,000원-기정75,000,000원 = 75,000
	303 포상금	1,156,011	1,096,011	60,000	◎성과상여금 1,117,561,000원-기정1,057,561,000원 = 60,000
	304 연금부담금 등	3,148,384	3,094,599	53,785	
		853,903	800,118	53,785	02 국민건강보험금 ◎정규직 25,681,322,000원x2.385%-기정573,491,000원 = 39,009

장:(1000)일반행정비 관:(1200)일반행정비 항:(1220)내무행정 세항:(1222)인사관리 세세항:(120)경상적경비 [남구본청][단위:천원]

과목 장.관.항.세항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일용직 10,121,690,000원x2.385%-기정226,627,000원 = 14,776

과목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1223 공무원단체관리		1,967,112	1,922,223	44,889	
100 경상예산		1,967,112	1,922,223	44,889	
110 인건비		1,135,077	1,133,988	1,089	
	101 인건비	1,135,077	1,133,988	1,089	
		581,206	580,117	1,089	09 일용인부임 ◎후생관 종사원 O기본급 28,500원x1명x246일-기정6,796,000원 = 215 O상여금 7,011,000원x4/12-기정2,266,000원 = 71 O가계보조비 7,011,000원x1/12-기정567,000원 = 18 O유급휴일수당 33,104원x1명x119일-기정3,746,000원 = 194 ◎후생관 영양사 O기본급 36,300원x1명x246일-기정8,680,000원 = 250 O상여금 8,930,000원x4/12-기정2,894,000원 = 83 O가계보조비 9,003,000원x1/12-기정724,000원 = 27

과목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유급휴일수당 39,584원x1명x119일-기정4,480,000원 = 231
120 경상적경비		832,035	788,235	43,800	
	201 일반운영비	63,670	39,670	24,000	
		51,550	27,550	24,000	01 일반운영비 ◎<임차료> ○문화공원 직원 주차장 임차료 40,000원x100대x6월 = 24,000
	303 포상금	579,600	559,800	19,800	◎영유아자녀 보육료 110,000원x135명x12월-기정158,400,000원 = 19,800

과목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1230 자치행정		3,176,647	3,018,192	158,455	[국 76,161 균 0 기 0] [시 111,763 구 2,988,723]
1231 자치행정		766,658	747,218	19,440	[국 15,991 균 0 기 0] [시 0 구 750,667]
100 경상예산		612,721	595,678	17,043	[국 7,952 균 0 기 0] [시 0 구 604,769]
110 인건비		140,643	140,600	43	[국 7,952 균 0 기 0] [시 0 구 132,691]
	101 인건비	140,643	140,600	43	
		7,952	7,909	43	10 일시사역인부임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업무보조요원[보조사업] 7,952,000원-기정7,909,000원 = 43 [경 정] [기 정] [증 감] (국) 7,952 - 7,909 = 43
120 경상적경비		472,078	455,078	17,000	
	201 일반운영비	268,325	264,125	4,200	
		268,325	264,125	4,200	01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기초질서감시단 운영 - 홍보용 팜프렛, 적발통보문 제작

과목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60원x30,000부 = 1,800
					- 휴대용 수첩 제작 3,000원x200부 = 600
					- 활동지침서 제작 2,000원x200부 = 400
					- 위촉장 제작 10,000원x40명 = 400
					- 단원증 제작 5,000원 x40명 = 200
					- 근무복(조끼) 구입 15,000원x40명 = 600
					- 모자 구입 5,000원x40명 = 200
	301 일반보상금	129,243	119,443	9,800	
		9,800	0	9,800	10 행사실비보상금 ◎민주평통 회장단 및 분과위원 교육 참석 70,000원x25명x2회 = 3,500 ◎민주평통 자문위원 중앙단위행사 참석 70,000원x45명x2일 = 6,300
	405 자산취득비	45,000	42,000	3,000	
		45,000	42,000	3,000	02 도서구입비 ◎동 마을문고 도서 구입

장:(1000)일반행정비 관:(1200)일반행정비 항:(1230)자치행정 세항:(1231)자치행정 세세항:(120)경상적경비 [남구본청][단위:천원]

과목 장.관.항.세항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45,000,000원-기정42,000,000원 = 3,000
200 사업예산		153,779	151,540	2,239	[국 8,039 균 0 기 0] [시 0 구 145,740]
210 보조사업		8,039	5,800	2,239	[국 8,039 균 0 기 0] [시 0 구 0]
	201 일반운영비	3,719	3,700	19	
		3,719	3,700	19	01 일반운영비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업무추진 3,719,000원-기정3,700,000원 = 19 [경 정] [기 정] [증 감] (국) 3,719 - 3,700 = 19
	202 여비	4,320	2,100	2,220	
		4,320	2,100	2,220	01 국내여비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업무추진 4,320,000원-기정2,100,000원 = 2,220 [경 정] [기 정] [증 감] (국) 4,320 - 2,100 = 2,220
220 자체사업		145,740	145,740	0	
	403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0	80,000	△80,000	

과목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0	80,000	△80,000	02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차량탑재형 범죄차량 자동판독기 구입(목 변경) 0원-기정80,000,000원 = △80,000
	405 자산취득비	80,000	0	80,000	
		80,000	0	80,0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차량탑재형 범죄차량 자동판독기 구입(목 변경) 40,000,000원x2대 = 80,000
400 예비비등		158	0	158	
420 기타		158	0	158	
	802 반환금기타	158	0	158	
		4	0	4	01 국고보조금반환금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업무보조요원 사용잔액 4,000원 = 4
		154	0	154	02 시·도비보조금반환금 ◎범죄없는마을 주민숙원사업비 사용잔액 153,370원 = 154

장:(1000)일반행정비 관:(1200)일반행정비 항:(1230)자치행정 세항:(1232)사회진흥 세세항:(220)자체사업 [남구본청][단위:천원]

과목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1232 사회진흥		341,318	296,318	45,000	[국 0 균 0 기 0] [시 27,763 구 313,555]
200 사업예산		294,226	249,226	45,000	[국 0 균 0 기 0] [시 27,763 구 266,463]
220 자체사업		238,700	193,700	45,000	
	307 민간이전	238,700	193,700	45,000	
		38,000	8,000	30,000	02 민간경상보조 ◎재해재난 인명구조단 활동 및 수중정화작업(해병전우회) 30,000,000원 = 30,000
		200,700	185,700	15,000	03 사회단체보조금 ◎민주평통남구협의회 지원 15,000,000원 = 15,000

장:(1000)일반행정비 관:(1200)일반행정비 항:(1230)자치행정 세항:(1233)주민자치관리 세세항:(210)보조사업 [남구본청][단위:천원]

과목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1233 주민자치관리		495,310	411,310	84,000	[국 0 균 0 기 0] [시 84,000 구 411,310]
200 사업예산		99,000	15,000	84,000	[국 0 균 0 기 0] [시 84,000 구 15,000]
210 보조사업		84,000	0	84,000	[국 0 균 0 기 0] [시 84,000 구 0]
	301 일반보상금	84,000	0	84,000	
		84,000	0	84,000	12 기타보상금 ◎주민자치센터 운영 강사수당[성립전예산] 84,000,000원 = 84,000 (시) 84,000

과목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1236 정보관리		879,259	879,244	15	[국 60,170 균 0 기 0] [시 0 구 819,089]
400 예비비등		15	0	15	
420 기타		15	0	15	
	802 반환금기타	15	0	15	
		15	0	15	01 국고보조금반환금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리스료 사용잔액 11,000원 = 11 ◎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 확산 사용잔액 3,600원 = 4

장:(1000)일반행정비 관:(1200)일반행정비 항:(1230)자치행정 세항:(1237)통신관리 세세항:(120)경상적경비 [남구본청][단위:천원]

과목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1237 통신관리		655,762	645,762	10,000	
100 경상예산		586,968	576,968	10,000	
120 경상적경비		586,968	576,968	10,000	
	201 일반운영비	553,618	543,618	10,000	
		553,618	543,618	10,000	01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양궁장 정보통신시설 유지보수비 10,000,000원 = 10,000

과목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1240 재무행정		2,360,954	2,291,362	69,592	[국 0 균 0 기 0] [시 90,351 구 2,270,603]
1241 지방세관리		1,028,169	1,001,013	27,156	[국 0 균 0 기 0] [시 21,351 구 1,006,818]
100 경상예산		927,964	912,161	15,803	[국 0 균 0 기 0] [시 15,243 구 912,721]
110 인건비		291,455	276,212	15,243	[국 0 균 0 기 0] [시 15,243 구 276,212]
	101 인건비	291,455	276,212	15,243	
		50,838	35,595	15,243	10 일시사역인부임 ◎2007년 상반기 지방세 징수업무지원[보조사업][성립전예산] O취득세 과세자료 전산입력 보조 - 기본급 27,840원x1명x63일 = 1,754 (시) 1,754 - 유급휴일수당 27,840원x1명x13일 = 362 (시) 362 - 기관부담금 2,115,840원x7.955% = 169 (시) 169 O주민세 과세자료 전산입력 보조 - 기본급 27,840원x1명x63일 = 1,754

과목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시)		1,754
					- 유급휴일수당	27,840원x1명x13일 =	362
					(시)		362
					- 기관부담금	2,115,840원x7.955% =	169
					(시)		169
					O지방세 과오납 환부업무 보조		
					- 기본급	27,840원x1명x39일 =	1,086
					(시)		1,086
					- 유급휴일수당	27,840원x1명x9일 =	251
					(시)		251
					- 기관부담금	1,336,320원x7.955% =	107
					(시)		107
					O체납세 징수 번호판영치 보조		
					- 기본급	27,840원x3명x64일 =	5,346
					(시)		5,346
					- 유급휴일수당	27,840원x3명x13일 =	1,086
					(시)		1,086
					- 기관부담금	6,431,040원x7.955% =	512
					(시)		512

과목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세무조사 및 사업소세 과세자료 전산입력보조 - 기본급 27,840원x1명x63일 = 1,754 (시) 1,754 - 유급휴일수당 27,840원x1명x13일 = 362 (시) 362 - 기관부담금 2,115,840원x7.955% = 169 (시) 169
120 경상적경비		636,509	635,949	560	
	201 일반운영비	426,849	426,289	560	
		426,849	426,289	560	01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기부심사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70,000원x4명x2회 = 560
200 사업예산		99,994	88,852	11,142	[국 0 균 0 기 0] [시 6,108 구 93,886]
210 보조사업		86,794	75,652	11,142	[국 0 균 0 기 0] [시 6,108 구 80,686]
	201 일반운영비	70,305	72,652	△2,347	

과목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70,305	72,652	△2,347	01 일반운영비
					◎2007년 상반기 지방세 징수업무지원[성립전예산]
					O지방세업무 추진활동 급량비 1,008,000원 = 1,008
					(시) 1,008
					◎개별주택가격 조사사업
					O<일반수용비>
					- 주택가격조사 각종서식 인쇄, 홍보물 제작
					14,022,000원x50%-기정12,450,000원 = △5,439
					- 주택가격 현황도면 구축비용
					28,000원x180도엽x2회x50%-기정7,560,000원 = △2,520
					-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 2007.1.1 기준 정기분 검증수수료
					5,040원x16,500호x1.1x50%-기정45,540,000원 = 198
					· 2007.6.1 기준 수시분 검증수수료
					5,040원x200호x1.1x50%-기정759,000원 = △204
					O<공공요금 및 제세>
					-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 우편발송

과목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 일반 190원x17,750호x50%-기정1,710,000원	=	△23
					· 등기 1,720원x400호x50%-기정258,000원	=	86
					O<급량비>		
					-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따른 특근매식비 9,788,000원x50%-기정1,800,000원	=	3,094
					O<운영수당>		
					- 부동산평가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6,056,000원x50%-기정1,575,000원	=	1,453
	202 여비	8,050	3,000	5,050			
		8,050	3,000	5,050	01 국내여비		
					◎2007년 상반기 지방세 징수업무지원[성립전예산]		
					O지방세업무 추진활동 여비 20,000원x51명x5일x1월	=	5,100
					(시)		5,100
					◎개별주택가격 조사사업 출장여비 5,900,000원x50%-기정3,000,000원	=	△50
	405 자산취득비	8,439	0	8,439			

과목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8,439	0	8,439	01 자산및물품취득비 ◎개별주택가격 조사사업 ○PC등 관련장비 구입 16,878,000원x50% = 8,439
400 예비비등		211	0	211	
420 기타		211	0	211	
	802 반환금기타	211	0	211	
		211	0	211	02 시·도비보조금반환금 ◎지방세 과징업무지원비 사용잔액 210,880원 = 211

과목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1243 재산관리		246,203	245,665	538	[국 0 균 0 기 0] [시 69,000 구 177,203]
100 경상예산		172,203	171,665	538	
110 인건비		25,454	24,916	538	
	101 인건비	25,454	24,916	538	
		20,153	19,615	538	09 일용인부임 ◎국.공유재산 관리원 O기본급 28,500원x1명x246일-기정6,796,000원 = 215 O상여금 7,011,000원x4/12-기정2,266,000원 = 71 O유급휴일수당 33,432원x119일-기정3,745,000원 = 234 O가계보조비 7,011,000원x1/12-기정567,000원 = 18

과목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1244 청사관리		977,302	935,404	41,898	
100 경상예산		643,525	634,227	9,298	
110 인건비		78,110	76,262	1,848	
	101 인건비	78,110	76,262	1,848	
		78,110	76,262	1,848	09 일용인부임 ◎청소관리원 O기본급 28,500원x4명x246일-기정27,181,000원 = 863 O상여금 28,044,000원x4/12-기정9,061,000원 = 287 O유급휴일수당 33,432원x4명x119일-기정15,287,000원 = 627 O가계보조비 28,044,000원x1/12-기정2,266,000원 = 71
120 경상적경비		565,415	557,965	7,450	
	201 일반운영비	545,015	545,565	△550	
		545,015	545,565	△550	01 일반운영비

과목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급량비> ○청사관리 업무추진 1,850,000원-기정2,400,000원 = △550
	202 여비	10,200	12,400	△2,200	
		10,200	12,400	△2,200	01 국내여비 ◎<관내여비> ○청사관리 업무추진 7,400,000원-기정9,600,000원 = △2,200
	301 일반보상금	10,200	0	10,200	
		10,200	0	10,200	12 기타보상금 ◎청사주차장관리 아르바이트 인부임(토.일.공휴일) 40,000원x3명x85일 = 10,200
200 사업예산		333,777	301,177	32,600	
220 자체사업		333,777	301,177	32,6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95,500	164,500	31,000	

장:(1000)일반행정비 관:(1200)일반행정비 항:(1240)재무행정 세항:(1244)청사관리 세세항:(220)자체사업 [남구본청][단위:천원]

과목 장.관.항.세항	목	예산액	기정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195,500	164,500	31,000	01 시설비 ◎삼산동사무소 재활용창고 증축공사비 6,000,000원 = 6,000 ◎청사정면 남구청 사인물 설치 공사비 25,000,000원 = 25,000
	405 자산취득비	44,100	42,500	1,600	
		44,100	42,500	1,6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의회 방송실 에어컨 구입 1,600,000원x1대 = 1,600

장:(2000)사회개발비 관:(2100)교육및문화비 항:(2110)문화예술 세항:(2111)문화예술 세세항:(110)인건비 [남구본청][단위:천원]

과목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2000 사회개발비		83,453,114	79,945,467	3,507,647	[국 18,667,069 균 1,210,000 기 1,152,661] [시 17,546,933 구 44,876,451]
2100 교육및문화비		6,125,071	5,741,076	383,995	[국 306,683 균 1,000,000 기 0] [시 745,538 구 4,072,850]
2110 문화예술		3,242,002	3,068,268	173,734	[국 0 균 1,000,000 기 0] [시 573,652 구 1,668,350]
2111 문화예술		820,926	653,721	167,205	[국 0 균 0 기 0] [시 68,000 구 752,926]
100 경상예산		194,718	182,753	11,965	
110 인건비		80,129	77,364	2,765	
	101 인건비	80,129	77,364	2,765	
		73,257	70,492	2,765	02 수당 ◎시간외근무수당 73,257,000원-기정70,492,000원 = 2,765
120 경상적경비		114,589	105,389	9,200	
	201 일반운영비	52,429	49,429	3,000	
		48,429	45,429	3,000	01 일반운영비 ◎<임차료> ○복사기 임차 250,000원x1대x12월 = 3,000

과목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301 일반보상금	37,120	30,920	6,200	
		10,600	4,400	6,200	10 행사실비보상금 ◎거리음악회 출연자 실비보상 6,200,000원 = 6,200
200 사업예산		625,968	470,968	155,000	[국 0 균 0 기 0] [시 68,000 구 557,968]
210 보조사업		103,000	87,000	16,000	[국 0 균 0 기 0] [시 68,000 구 35,000]
	201 일반운영비	16,000	0	16,000	
		16,000	0	16,000	02 행사운영비 ◎제41회 처용문화제 남구홍보관 운영 16,000,000원 = 16,000 (시) 6,000 (구) 10,000
220 자체사업		522,968	383,968	139,000	
	307 민간이전	318,668	273,668	45,000	
		45,000	0	45,000	05 민간위탁금 ◎남구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 15,000,000원x3개관 = 45,000

장:(2000)사회개발비 관:(2100)교육및문화비 항:(2110)문화예술 세항:(2111)문화예술 세세항:(220)자체사업 [남구본청][단위:천원]

과목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401 시설비및부대비	90,000	0	90,000	
		90,000	0	90,000	01 시설비 ◎남구 작은도서관 조성(리모델링) 30,000,000원x3개관 = 90,000
	405 자산취득비	4,300	300	4,000	
		4,300	300	4,0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남구홍보관용 TV(LCD) 구입 4,000,000원 = 4,000
400 예비비등		240	0	240	
420 기타		240	0	240	
	802 반환금기타	240	0	240	
		240	0	240	02 시·도비보조금반환금 ◎남구문화원 보수공사 사용잔액 239,130원 = 240

과목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2113 고래박물관운영		2,398,668	2,392,139	6,529	[국 0 균 1,000,000 기 0] [시 500,000 구 898,668]
100 경상예산		356,220	349,691	6,529	
110 인건비		54,393	53,864	529	
	101 인건비	54,393	53,864	529	
		41,961	41,432	529	08 기타직보수 ◎청원경찰 O급여 1,513,100원x1명x12월-기정17,872,000원 = 286 O정근수당 18,158,000원x0.9/12-기정1,341,000원 = 21 O명절휴가비 18,158,000원x1.2/12-기정1,788,000원 = 28 O가계지원비 18,158,000원x2/12-기정2,979,000원 = 48 O연가보상금 18,158,000원x17/360-기정844,000원 = 14 O자녀학비수당

과목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 중학교 49,620원x1명x4회-기정191,000원 = 8
					- 고등학교 401,040원x2명x4회-기정3,085,000원 = 124
120 경상적경비		301,827	295,827	6,000	
	301 일반보상금	33,200	27,200	6,000	
		6,000	0	6,000	08 외빈초청여비
					◎고래기증협약 체결 일본관계자 초청
					○항공료(부산 <-> 오사카) 600,000원x3명 = 1,800
					○숙박료 및 식비 700,000원x3명x2일 = 4,200

과목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2120 체육및청소년육성		2,883,069	2,672,808	210,261	[국 306,683 균 0 기 0] [시 171,886 구 2,404,500]
2121 체육진흥		2,080,200	1,977,516	102,684	[국 127,269 균 0 기 0] [시 67,054 구 1,885,877]
100 경상예산		782,684	759,679	23,005	
110 인건비		82,704	82,199	505	
	101 인건비	82,704	82,199	505	
		82,704	82,199	505	08 기타직보수 ◎청원경찰 O급여 1,695,100원x2명x12월-기정40,324,000원 = 359 O정근수당 40,683,000원x0.9/12-기정3,025,000원 = 27 O자녀학비수당(중학생) 49,620원x1명x4회-기정193,000원 = 6 O가계지원비 40,683,000원x2/12-기정6,721,000원 = 60 O명절휴가비 40,683,000원x1.2/12-기정4,033,000원 = 36

과목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연가보상비 40,683,000원x17/360-기정1,905,000원 = 17
120 경상적경비		699,980	677,480	22,500	
	201 일반운영비	194,583	184,983	9,600	
		191,483	181,883	9,600	01 일반운영비 ◎양궁장 시설정비 ○양궁장내 홍보사진판 제작 2,000,000원x4개 = 8,000 ○양궁장 관중석 홍보 현판 설치 1,500,000원x2개 = 3,000 ◎<급량비> ○체육청소년 업무추진 4,000,000원-기정3,600,000원 = 400 ○세계선수권 및 각종 양궁대회 준비 600,000원-기정2,400,000원 = △1,800
	202 여비	48,080	39,180	8,900	
		28,780	27,180	1,600	01 국내여비

과목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관내여비> O체육청소년 업무추진 16,000,000원-기정14,400,000원 = 1,600
		19,300	12,000	7,300	03 국외여비 ◎우호도시간 스포츠교류 증진사업 550,000원x6명 = 3,300 ◎제44회 세계양궁선수권대회 견학(독일) 16,000,000원-기정12,000,000원 = 4,000
	301 일반보상금	443,317	439,317	4,000	
		8,000	4,000	4,000	07 민간인국외여비 ◎제44회 세계양궁선수권대회 견학 8,000,000원-기정4,000,000원 = 4,000
200 사업예산		1,296,317	1,217,837	78,480	[국 127,269 균 0 기 0] [시 67,054 구 1,101,994]
210 보조사업		285,977	258,997	26,980	[국 127,269 균 0 기 0] [시 67,054 구 91,654]
	307 민간이전	285,977	258,997	26,980	
		285,977	258,997	26,980	02 민간경상보조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과목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215,800,000원-기정189,360,000원 = 26,440 [경 정] [기 정] [증 감] (국) 99,900 - 87,480 = 12,420 (시) 49,950 - 43,740 = 6,210 (구) 65,950 - 58,140 = 7,810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사업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21,580,000원-기정21,040,000원 = 540 [경 정] [기 정] [증 감] (국) 9,990 - 9,720 = 270 (시) 4,995 - 4,860 = 135 (구) 6,595 - 6,460 = 135
220 자체사업		1,010,340	958,840	51,500	
	307 민간이전	816,440	764,940	51,500	
		638,390	586,890	51,500	02 민간경상보조 ◎동민체육대회 지원 33,000,000원-기정21,000,000원 = 12,000 ◎여성생활체육 육성 지원 ㅇ여성축구단 지원 10,000,000원-기정4,000,000원 = 6,000 ㅇ여성배구단 지원 8,000,000원-기정2,000,000원 = 6,000

과목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우호도시간 스포츠 교류 증진사업 550,000원x50명 = 27,500
400 예비비등		1,199	0	1,199	
420 기타		1,199	0	1,199	
	802 반환금기타	1,199	0	1,199	
		799	0	799	01 국고보조금반환금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사용잔액 798,460원 = 799
		400	0	400	02 시·도비보조금반환금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사용잔액 399,230원 = 400

과목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2122 청소년육성		722,083	695,292	26,791	[국 179,414 균 0 기 0] [시 104,832 구 437,837]
100 경상예산		44,160	10,600	33,560	
120 경상적경비		44,160	10,600	33,560	
	201 일반운영비	38,060	4,500	33,560	
		38,060	4,500	33,560	01 일반운영비 ◎청소년 책자 제작(행정안내) 1,000원x33,000부 = 33,000 ◎청소년육성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1,120,000원-기정560,000원 = 560
200 사업예산		666,920	684,692	△17,772	[국 179,414 균 0 기 0] [시 104,832 구 382,674]
210 보조사업		411,828	429,600	△17,772	[국 179,414 균 0 기 0] [시 104,832 구 127,582]
	301 일반보상금	32,000	30,600	1,400	
		16,000	14,600	1,400	12 기타보상금 ◎비행청소년 예방선도 활동 14,000,000원-기정12,600,000원 = 1,400 [경 정] [기 정] [증 감] (시) 7,000 - 6,300 = 700 (구) 7,000 - 6,300 = 700

과목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307 민간이전	379,828	399,000	△19,172	
		17,498	22,000	△4,502	02 민간경상보조 ◎청소년어울마당 운영 9,498,000원-기정14,000,000원 = △4,502 [경 정] [기 정] [증 감] (국) 4,749 - 0 = 4,749 (시) 0 - 7,000 = △7,000 (구) 4,749 - 7,000 = △2,251
		362,330	377,000	△14,670	05 민간위탁금 ◎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14,720,000원-기정24,000,000원 = △9,280 [경 정] [기 정] [증 감] (국) 7,360 - 12,000 = △4,640 (시) 3,680 - 6,000 = △2,320 (구) 3,680 - 6,000 = △2,320 ◎청소년문화의집 지도사 배치 33,600,000원-기정31,200,000원 = 2,400 [경 정] [기 정] [증 감] (국) 16,800 - 15,600 = 1,200 (시) 8,400 - 7,800 = 600 (구) 8,400 - 7,800 = 600

과목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5,320,000원-기정8,000,000원 = △2,680 [경 정] [기 정] [증 감] (국) 2,660 - 4,000 = △1,340 (시) 1,330 - 2,000 = △670 (구) 1,330 - 2,000 = △670 ◎청소년쉼터 운영비 지원 120,000,000원-기정100,000,000원 = 20,000 [경 정] [기 정] [증 감] (국) 60,000 - 50,000 = 10,000 (시) 30,000 - 25,000 = 5,000 (구) 30,000 - 25,000 = 5,000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168,689,500원-기정193,800,000원 = △25,110 [경 정] [기 정] [증 감] (국) 77,845 - 90,900 = △13,055 (시) 38,922 - 45,450 = △6,528 (구) 51,923 - 57,450 = △5,527
400 예비비등		11,003	0	11,003	
420 기타		11,003	0	11,003	
	802 반환금기타	11,003	0	11,003	

장:(2000)사회개발비 관:(2100)교육및문화비 항:(2120)체육및청소년육성 세항:(2122)청소년육성 세세항:(420)기타 [남구본청][단위:천원]

과목		예산액	기정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7,335	0	7,335	01 국고보조금반환금
					◎방과후아카데미 운영비 사용잔액 7,334,984원 = 7,335
		3,668	0	3,668	02 시·도비보조금반환금
					◎방과후아카데미 운영비 사용잔액 3,667,492원 = 3,668

과목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2123 양궁대회지원		80,786	0	80,786	
100 경상예산		71,931	0	71,931	
110 인건비		15,550	0	15,550	
	101 인건비	15,550	0	15,550	
		15,550	0	15,550	02 수당 ◎시간외근무수당 8,036원x5명x43시간x9월 = 15,550
120 경상적경비		56,381	0	56,381	
	201 일반운영비	40,701	0	40,701	
		40,701	0	40,701	01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기본경비 4,101,000원 = 4,101 ○양궁월드컵 사진첩 제작 1,000,000원 = 1,000 ○양궁월드컵 자료집(대회 백서 등) 발간 5,000,000원 = 5,000 ○양궁월드컵 감사서한문 제작 300,000원 = 300

과목 장.관.항.세항	과목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양궁월드컵 유공 민간인 감사패 제작 200,000원x10개 = 2,000 ○세계양궁선수권대회 홍보 - 홍보 리후렛 제작 5,000매x200원 = 1,000 - 대회 상징 봉투 및 종이가방 제작 2,000,000원 = 2,000 - D-day 알림판 보수 1,000,000원 = 1,000 - 대회 홍보 영상물 제작 3,000,000원 = 3,000 ○세계선수권대회 기본계획 책자인쇄 3,000,000원 = 3,000 ○세계선수권대회 기본계획 파워포인트 작성 1,000,000원 = 1,000 ○세계선수권대회 홍보용 기념품 제작(열쇠고리,포스트잇 등) 10,000,000원 = 10,000 ○세계선수권대회 상황판 제작 500,000원 = 500 ◎<임차료> ○복사기 임차 250,000원x1대x11월 = 2,750

과목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예산액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산출기초
					◎<급량비> O세계양궁선수권대회 기획단 업무추진 5,000원x5명x10식x9월 = 2,250 O세계양궁선수권대회 홍보 업무추진 5,000원x5명x8식x9월 = 1,800
	202 여비	12,780	0	12,780	
		12,780	0	12,780	01 국내여비 ◎<관내 여비> O세계양궁선수권대회 기획단 업무추진 20,000원x5명x10일x9월 = 9,000 ◎<관외여비> O세계양궁선수권대회 준비관련 협의 및 타 자치단체 대회 견학 70,000원x2명x3일x5회 = 2,100 O양궁장 확장공사 업무협의 70,000원x2명x3일x4회 = 1,680
	203 업무추진비	2,900	0	2,900	
		2,000	0	2,000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과목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예산액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산출기초
					◎양궁선수권대회 업무추진 2,000,000원 = 2,000
		900	0	900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00,000원x9월 = 900
200 사업예산		8,855	0	8,855	
220 자체사업		8,855	0	8,855	
	405 자산취득비	8,855	0	8,855	
		8,855	0	8,855	01 자산및물품취득비
					◎대회 기획단 물품 구입
					○TV(29인치) 350,000원 = 350
					○냉장고 350,000원 = 350
					○디지털 카메라 320,000원 = 320
					○가스난로(히터) 240,000원 = 240
					○온수기 500,000원 = 500
					○가습기 95,000원 = 95

과목		예산액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산출기초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대회 기획단 집기 구입
					○캐비넷 외 5종 7,000,000원 = 7,000

과목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2200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26,820,567	26,526,746	293,821	[국 305,478 균 0 기 1,034,787] [시 1,571,653 구 23,908,649]
2210 보건위생		6,827,674	7,094,654	△266,980	[국 207,478 균 0 기 1,034,787] [시 962,901 구 4,622,508]
2211 공중위생		130,259	129,747	512	
100 경상예산		129,909	129,397	512	
110 인건비		94,453	93,941	512	
	101 인건비	94,453	93,941	512	
		19,814	19,302	512	09 일용인부임 ◎기본급 28,500원x1명x246일-기정6,796,000원 = 215 ◎상여금 7,011,000원x4/12-기정2,266,000원 = 71 ◎유급휴일수당 34,416원x119일-기정3,899,000원 = 197 ◎연차수당 34,416원x10일-기정334,000원 = 11 ◎가계보조비 7,011,000원x1/12-기정567,000원 = 18

과목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2214 보건소운영		6,634,260	6,901,752	△267,492	[국 207,478 균 0 기 1,034,787] [시 962,901 구 4,429,094]
100 경상예산		2,907,779	2,998,727	△90,948	[국 3,750 균 0 기 107,497] [시 61,604 구 2,734,928]
110 인건비		2,366,518	2,461,186	△94,668	[국 3,750 균 0 기 107,497] [시 61,604 구 2,193,667]
	101 인건비	2,366,518	2,461,186	△94,668	
		67,080	63,960	3,120	03 정액급식비 ◎정액급식비 67,080,000원-기정63,960,000원 = 3,120
		63,960	62,400	1,560	04 교통보조비 ◎교통보조비 63,960,000원-기정62,400,000원 = 1,560
		279,177	273,276	5,901	08 기타직보수 ◎계약직(전문직-가급)공무원 O연봉 86,710,000원-기정83,710,000원 = 3,000 ◎계약직(전문직-나급)공무원 O연봉 37,070,000원-기정35,763,000원 = 1,307 O학비수당 480,000원x1명x4회 = 1,920

과목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계약직(전문직-라급)공무원			
					○연봉	28,460,000원-기정27,451,000원	=	1,009
					◎청원경찰			
					○급여	1,626,900원x1명x12월-기정19,216,000원	=	307
					○정근수당	19,523,000원x0.9/12-기정3,203,000원	=	△1,738
					○가계지원비	19,523,000원x2/12-기정3,203,000원	=	51
					○명절휴가비	19,523,000원x1.2/12-기정1,922,000원	=	31
					○연가보상비	19,523,000원x17/360-기정908,000원	=	14
		22,885	22,451	434	09 일용인부임			
					◎병리검사원			
					○기본급	36,300원x1명x246일-기정8,680,000원	=	250
					○상여금	8,930,000원x4/12-기정2,894,000원	=	83

과목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유급휴일수당 39,936원x1명x119일-기정4,673,000원 = 80 ○가계보조비 8,930,000원x1/12-기정724,000원 = 21
		289,811	395,494	△105,683	10 일시사역인부임 ◎동 방역인부(목 변경) ○기본급 0원-기정83,207,000원 = △83,207 ○유급휴일수당 0원-기정20,085,000원 = △20,085 ◎<가족보건> ○불임부부 지원사업 인부임 7,500,000원-기정6,750,000원 = 750 [경 정] [기 정] [증 감] (국) 3,750 - 3,375 = 375 (시) 1,875 - 1,688 = 187 (구) 1,875 - 1,687 = 188 ◎<건강증진> ○건강생활실천사업 - 체력단련실 운동처방사 인부임[보조사업] 11,320,000원-기정11,321,000원 = △1

과목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경 정] [기 정] [증 감] (기) 5,660 - 5,660 = 0 (시) 2,830 - 2,830 = 0 (구) 2,830 - 2,831 = △1 ◎<진료> O방문보건사업[보조사업] 96,060,000원-기정99,200,000원 = △3,140 [경 정] [기 정] [증 감] (기) 48,030 - 49,600 = △1,570 (시) 24,015 - 24,800 = △785 (구) 24,015 - 24,800 = △785
120 경상적경비		541,261	537,541	3,720	
	204 직무수행경비	101,880	98,160	3,720	
		71,280	68,760	2,520	02 직급보조비 ◎8~9급 15,120,000원-기정12,600,000원 = 2,520
		24,600	23,400	1,200	03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 24,600,000원-기정23,400,000원 = 1,200
200 사업예산		3,404,493	3,903,025	△498,532	[국 203,728 균 0 기 927,290] [시 901,297 구 1,372,178]

과목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210 보조사업		2,664,913	3,292,337	△627,424	[국 203,728 균 0 기 927,290] [시 901,297 구 632,598]
	201 일반운영비	120,297	134,289	△13,992	
		120,297	134,289	△13,992	01 일반운영비 ◎<가족보건>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 - 확대사업 운영비 0원-기정2,000,000원 = △2,000 [경 정] [기 정] [증 감] (기) 0 - 1,000 = △1,000 (시) 0 - 1,000 = △1,000 - 확대사업 홍보물 인쇄 0원-기정1,400,000원 = △1,400 [경 정] [기 정] [증 감] (기) 0 - 700 = △700 (시) 0 - 700 = △700 ○모자보건사업 - 임산부 산전관리비 지원(모자보건수첩 및 서식인쇄) 0원-기정5,703,000원 = △5,703 [경 정] [기 정] [증 감] (기) 0 - 2,281 = △2,281 (시) 0 - 1,711 = △1,711

과목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구) 0 - 1,711 = △1,711
					○생애전환기 일제 건강진단사업(홍보비)
					711,000원 = 711
					(국) 355
					(시) 178
					(구) 178
					◎<건강증진>
					○건강생활실천사업(영양사업)
					- 영양교육 자료개발 1,000,000원 = 1,000
					(기) 500
					(시) 500
					- 영양교육 자료개발 자문수당 200,000원 = 200
					(기) 100
					(시) 100
					○건강생활실천사업(운동지원사업)
					- 걷기동아리등 운영물품 구입
					3,080,000원-기정6,080,000원 = △3,000
					[경 정] [기 정] [증 감]
					(기) 1,540 - 3,040 = △1,500
					(시) 770 - 1,520 = △750
					(구) 770 - 1,520 = △750
					○치아홈메우기사업

과목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 교육자료 구입 1,000,000원 = 1,000 (기) 500 (시) 250 (구) 250
					◎<진료>
					O방문보건사업
					- 차량임대 6,000,000원-기정9,000,000원 = △3,000 [경 정] [기 정] [증 감] (기) 3,000 - 4,500 = △1,500 (시) 1,500 - 2,250 = △750 (구) 1,500 - 2,250 = △750
					- 차량유지비 1,000,000원-기정2,400,000원 = △1,400 [경 정] [기 정] [증 감] (기) 0 - 1,200 = △1,200 (시) 500 - 600 = △100 (구) 500 - 600 = △100
					- 교육홍보자료 600,000원-기정1,000,000원 = △400 [경 정] [기 정] [증 감] (기) 0 - 500 = △500 (시) 300 - 250 = 50 (구) 300 - 250 = 50

과목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202 여비	5,400	4,000	1,400	
		5,400	4,000	1,400	01 국내여비 ◎<진료> O방문보건사업 - FMTP 교육여비 1,400,000원 = 1,400 (시) 700 (구) 700
	203 업무추진비	2,600	3,200	△600	
		2,600	3,200	△600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가족보건> O국가필수 예방접종 확대사업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0원-기정600,000원 = △600 [경 정] [기 정] [증 감] (기) 0 - 300 = △300 (시) 0 - 300 = △300
	301 일반보상금	81,228	82,730	△1,502	
		5,938	5,940	△2	01 사회보장적수혜금

과목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진료> O한센양로자 생계비지원 5,938,000원-기정5,940,000원 = △2 [경 정] [기 정] [증 감] (기) 2,969 - 2,970 = △1 (시) 2,969 - 2,970 = △1
		75,290	76,790	△1,500	10 행사실비보상금 ◎<가족보건> O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 자문회의수당 0원-기정6,000,000원 = △6,000 [경 정] [기 정] [증 감] (기) 0 - 3,000 = △3,000 (시) 0 - 3,000 = △3,000 ◎<건강증진> O산업장 운동교육 강사비 3,700,000원-기정700,000원 = 3,000 [경 정] [기 정] [증 감] (기) 1,850 - 350 = 1,500 (시) 925 - 175 = 750 (구) 925 - 175 = 750

과목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진료> O방문보건사업 - 방문간호 자원봉사자운영 교육운영비 400,000원-기정1,200,000원 = △800 [경 정] [기 정] [증 감] (기) 200 - 600 = △400 (시) 100 - 300 = △200 (구) 100 - 300 = △200 - 방문 일시사역 교육여비 2,300,000원 = 2,300 (시) 1,150 (구) 1,150
	307 민간이전	2,406,488	3,019,218	△612,730	
		1,684,454	2,315,879	△631,425	01 의료및구료비 ◎<가족보건> O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 - 약품비 125,444,000원-기정99,488,000원 = 25,956 [경 정] [기 정] [증 감] (기) 62,722 - 49,744 = 12,978 (시) 31,361 - 24,870 = 6,491 (구) 31,361 - 24,874 = 6,487

과목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 병.의원 접종비 0원-기정633,152,000원 = △633,152
					[경 정] [기 정] [증 감]
					(기) 0 - 316,576 = △316,576
					(시) 0 - 158,288 = △158,288
					(구) 0 - 158,288 = △158,288
					O모자보건사업
					- 임산부 산전관리비(영양제)
					0원-기정21,600,000원 = △21,600
					[경 정] [기 정] [증 감]
					(기) 0 - 8,640 = △8,640
					(시) 0 - 6,480 = △6,480
					(구) 0 - 6,480 = △6,480
					- 전담관리기관의 급여 및 도우미교육비
					10,535,000원-기정10,716,000원 = △181
					[경 정] [기 정] [증 감]
					(국) 8,428 - 8,573 = △145
					(시) 1,054 - 1,071 = △17
					(구) 1,053 - 1,072 = △19
					◎<건강증진>
					O치아홈메우기사업
					- 교육자료 구입 0원-기정1,000,000원 = △1,000

과목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경 정] [기 정] [증 감] (기) 0 - 500 = △500 (시) 0 - 250 = △250 (구) 0 - 250 = △250 ○구강보건사업 - 중증장애인 무료보철 기공료 9,000,000원-기정4,000,000원 = 5,000 [경 정] [기 정] [증 감] (시) 4,500 - 2,000 = 2,500 (구) 4,500 - 2,000 = 2,500 ◎<진료>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620,984,000원-기정622,892,000원 = △1,908 [경 정] [기 정] [증 감] (기) 310,492 - 311,446 = △954 (시) 155,246 - 155,723 = △477 (구) 155,246 - 155,723 = △477 ○방문보건사업 - 기초조사 물품비 2,000,000원-기정4,240,000원 = △2,240 [경 정] [기 정] [증 감] (기) 0 - 2,120 = △2,120

과목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시) 1,000 - 1,060 = △60
					(구) 1,000 - 1,060 = △60
					- 약품 및 소모품
					22,700,000원-기정25,000,000원 = △2,300
					[경 정] [기 정] [증 감]
					(시) 11,350 - 12,500 = △1,150
					(구) 11,350 - 12,500 = △1,150
		722,034	703,339	18,695	05 민간위탁금
					◎<진료>
					○정신보건사업
					-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112,228,000원-기정91,285,000원 = 20,943
					[경 정] [기 정] [증 감]
					(시) 95,394 - 77,592 = 17,802
					(구) 16,834 - 13,693 = 3,141
					-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9,120,000원 = 9,120
					(시) 9,120
					◎<가족보건>
					○국가암관리사업

과목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 국가암 조기검진사업 160,200,000원-기정171,008,000원 = △10,808 [경 정] [기 정] [증 감] (기) 80,100 - 85,504 = △5,404 (시) 40,050 - 42,752 = △2,702 (구) 40,050 - 42,752 = △2,702 O건강관리사업 - 저소득시민 건강검진사업 81,438,000원-기정76,972,000원 = 4,466 [경 정] [기 정] [증 감] (시) 40,719 - 38,486 = 2,233 (구) 40,719 - 38,486 = 2,233 O모자보건사업 - 풍진검사 및 기형아검사 11,700,000원-기정19,154,000원 = △7,454 [경 정] [기 정] [증 감] (시) 5,850 - 9,577 = △3,727 (구) 5,850 - 9,577 = △3,727 O생애전환기 일제 건강진단사업 2,428,000원 = 2,428 (국) 1,942 (시) 243 (구) 243

장:(2000)사회개발비 관:(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 항:(2210)보건위생 세항:(2214)보건소운영 세세항:(220)자체사업 [남구본청][단위:천원]

과목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220 자체사업		739,580	610,688	128,892	
	207 연구개발비	15,000	0	15,000	
		15,000	0	15,000	01 용역비 ◎방역민간위탁 비용산정 용역비 15,000,000원 = 15,000
	307 민간이전	596,805	486,913	109,892	
		377,474	355,874	21,600	01 의료및구료비 ◎<가족보건> O모자보건사업 - 임산부 산전관리비(영양제) 9,000원x200명x12월 = 21,600
		219,331	131,039	88,292	05 민간위탁금 ◎방역사업 O동방역 88,292,000원 = 88,292
	405 자산취득비	28,900	24,900	4,000	
		28,900	24,900	4,0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과목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건강증진> O산업체운동사업 체성분 분석기 구입 4,000,000원 = 4,000
400 예비비등		321,988	0	321,988	
420 기타		321,988	0	321,988	
	802 반환금기타	321,988	0	321,988	
		220,717	0	220,717	01 국고보조금반환금 ◎보건분야 사용잔액 220,716,320원 = 220,717
		101,271	0	101,271	02 시・도비보조금반환금 ◎보건분야 사용잔액 101,270,070원 = 101,271

과목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2220 환경관리		17,754,580	17,616,607	137,973	[국 0 균 0 기 0] [시 41,444 구 17,713,136]
2221 환경관리		385,352	370,982	14,370	[국 0 균 0 기 0] [시 14,370 구 370,982]
200 사업예산		21,370	7,000	14,370	[국 0 균 0 기 0] [시 14,370 구 7,000]
210 보조사업		14,370	0	14,370	[국 0 균 0 기 0] [시 14,370 구 0]
	201 일반운영비	14,370	0	14,370	
		14,370	0	14,370	01 일반운영비 ◎1사 1하천 살리기운동 참여단체 지원[성립전예산] O담당구역 표지판 설치 5,800,000원 = 5,800 (시) 5,800 O환경정화활동 청소장비구입 5,070,000원 = 5,070 (시) 5,070 O우수 참여업체 표창패 구입 1,500,000원 = 1,500 (시) 1,500 O환경정화참여단체 간식지원 2,000,000원 = 2,000 (시) 2,000

과목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2222 환경미화		12,978,606	12,893,265	85,341	[국 0 균 0 기 0] [시 11,100 구 12,967,506]
100 경상예산		8,001,023	7,807,115	193,908	
110 인건비		7,210,015	7,025,347	184,668	
	101 인건비	7,210,015	7,025,347	184,668	
		7,095,863	6,911,195	184,668	09 일용인부임 ◎환경미화원 인부임 7,095,863,000원-기정6,911,195,000원 = 184,668
120 경상적경비		791,008	781,768	9,240	
	201 일반운영비	418,054	422,334	△4,280	
		418,054	422,334	△4,280	01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O양심거울 제작 500,000원x14개동 = 7,000 ◎<시설장비유지비> O쓰레기불법투기 감시카메라(디지털) 이전설치 및 유지관리 150,000원x16대x6월-기정27,000,000원 = △12,600

과목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쓰레기종량제봉투 물류전산화 프로그램 유지보수 110,000원x12월 = 1,320
	202 여비	22,840	18,040	4,800	
		22,840	18,040	4,800	01 국내여비 ◎<관내여비> ○환경미화 업무추진 20,000원x8명x10일x12월-기정14,400,000원 = 4,800
	304 연금부담금등	241,043	232,323	8,720	
		241,043	232,323	8,720	01 연금부담금 ◎환경미화원 국민연금부담금 241,043,000원-기정232,323,000원 = 8,720
200 사업예산		4,977,452	5,086,150	△108,698	[국 0 균 0 기 0] [시 11,100 구 4,966,352]
220 자체사업		4,955,252	5,063,950	△108,698	
	206 재료비	471,740	451,740	20,000	◎공공용마대 제작 35,000,000원-기정15,000,000원 = 20,000
	307 민간이전	3,665,312	3,794,010	△128,698	

과목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3,661,812	3,790,510	△128,698	05 민간위탁금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비 3,499,812,000원-기정3,628,510,000원 = △128,698
400 예비비등		131	0	131	
420 기타		131	0	131	
	802 반환금기타	131	0	131	
		131	0	131	02 시·도비보조금반환금 ◎장애인체전대비 청결활동지원 사용잔액 131,000원 = 131

과목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2223 재활용관리		854,458	852,573	1,885	[국 0 균 0 기 0] [시 9,350 구 845,108]
400 예비비등		1,885	0	1,885	
420 기타		1,885	0	1,885	
	802 반환금기타	1,885	0	1,885	
		1,885	0	1,885	02 시・도비보조금반환금 ◎농촌폐비닐 수집장려금 사용잔액 527,000원 = 527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구입비 사용잔액 276,600원 = 277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운송경비 사용잔액 1,080,250원 = 1,081

과목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2224 오수관리		636,664	618,679	17,985	[국 0 균 0 기 0] [시 6,624 구 630,040]
100 경상예산		237,534	234,544	2,990	
110 인건비		127,645	124,655	2,990	
	101 인건비	127,645	124,655	2,990	
		40,645	40,059	586	08 기타직보수 ◎하수관리 청원경찰 O급여 1,757,800원x1명x12월-기정20,763,000원 = 331 O정근수당 21,094,000원x0.9/12-기정1,558,000원 = 25 O명절휴가비 21,094,000원x1.2/12-기정2,077,000원 = 33 O연가보상비 21,094,000원x17/360-기정981,000원 = 16 O가계지원비 21,094,000원x2/12-기정3,461,000원 = 55 O자녀학비수당(고등학생) 401,040원x1명x4회-기정1,479,000원 = 126

과목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87,000	84,596	2,404	09 일용인부임
					◎하수도준설 및 가정오수관 연결공사 보조원
					○기본급 41,300원x2명x246일-기정19,766,000원 = 554
					○상여금 20,320,000원x4/12-기정6,589,000원 = 185
					○유급휴일수당 45,240원x2명x119일-기정10,325,000원 = 443
					○연차수당 45,240원x2명x10일-기정883,000원 = 22
					○가계보조비 20,320,000원x1/12-기정1,648,000원 = 46
					◎준설차 기계공
					○기본급 57,150원x1명x246일-기정13,700,000원 = 359
					○근속가산금 120,000원x1명x12월-기정1,200,000원 = 240
					○상여금 14,059,000원x4/12-기정4,567,000원 = 120
					○유급휴일수당 60,760원x1명x119일-기정6,848,000원 = 383

과목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연차수당 60,760원x1명x10일-기정586,000원 =	22
					○가계보조비 14,059,000원x1/12-기정1,142,000원 =	30
200 사업예산		397,383	384,135	13,248	[국 0 균 0 기 0] [시 6,624 구 390,759]	
210 보조사업		13,248	0	13,248	[국 0 균 0 기 0] [시 6,624 구 6,624]	
	201 일반운영비	13,248	0	13,248		
		13,248	0	13,248	01 일반운영비	
					◎민간운영 공중개방화장실 편의용품 지원사업 12,000원x92개소x12회 =	13,248
					(시)	6,624
					(구)	6,624
400 예비비등		1,747	0	1,747		
420 기타		1,747	0	1,747		
	802 반환금기타	1,747	0	1,747		
		1,747	0	1,747	02 시·도비보조금반환금	
					◎개방화장실 편의용품지원사업 사용잔액 727,030원 =	728

과목 장.관.항.세항	과목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장애인체전 경기장 화장실 지원사업 사용잔액 1,019,000원 = 1,019

과목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2225 음식물처리		2,816,178	2,797,786	18,392	
200 사업예산		2,694,250	2,692,250	2,000	
220 자체사업		2,694,250	2,692,250	2,000	
	405 자산취득비	2,000	0	2,000	
		2,000	0	2,0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하수병합시설 공기청정기 구입 2,000,000원x1대 = 2,000
400 예비비등		16,392	0	16,392	
420 기타		16,392	0	16,392	
	802 반환금기타	16,392	0	16,392	
		16,392	0	16,392	02 시・도비보조금반환금 ◎음식물전용용기제작 사용잔액 16,391,140원 = 16,392

과목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2230 공원녹지관리		2,238,313	1,815,485	422,828	[국 98,000 균 0 기 0] [시 567,308 구 1,573,005]
2231 공원관리		1,105,529	1,038,448	67,081	[국 0 균 0 기 0] [시 126,000 구 979,529]
100 경상예산		544,494	507,513	36,981	[국 0 균 0 기 0] [시 126,000 구 418,494]
110 인건비		430,769	429,788	981	[국 0 균 0 기 0] [시 126,000 구 304,769]
	101 인건비	430,769	429,788	981	
		76,636	75,655	981	08 기타직보수 ◎공원감시 청원경찰 O급여 1,695,100원x2명x12월-기정39,978,000원 = 705 O정근수당 40,683,000원x0.9/12-기정2,999,000원 = 53 O명절휴가비 40,683,000원x1.2/12-기정3,998,000원 = 71 O가계지원비 40,683,000원x2/12-기정6,663,000원 = 118 O연가보상비 40,683,000원x17/360-기정1,888,000원 = 34

과목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120 경상적경비		113,725	77,725	36,000	
	201 일반운영비	97,365	61,365	36,000	
		97,365	61,365	36,000	01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O공원화장실 관리용품구입(선암수변공원 화장실 신축) 4,050,000원-기정1,800,000원 = 2,250 ◎<임차료> O선암수변공원 및 야음근린공원 부지정비 장비 임차 12,000,000원 = 12,000 ◎<시설장비유지비> O동력기계유지비 4,750,000원-기정3,000,000원 = 1,750 ◎<공공요금 및 제세> O선암수변공원 전기료(공원등, 연꽃군락지 수중펌프, 화장실) 20,000,000원 = 20,000
200 사업예산		561,035	530,935	30,100	
220 자체사업		561,035	530,935	30,100	

과목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206 재료비	42,425	32,325	10,100	◎공원관리에 필요한 재료 구입 O생명정 구입 4,200,000원-기정2,100,000원 = 2,100 O계분 구입 6,700,000원-기정2,700,000원 = 4,000 O병충해 방제 약제 및 활력제 구입 10,000,000원-기정6,000,000원 = 4,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515,210	495,210	20,000	
		512,375	492,375	20,000	01 시설비 ◎선암수변공원내 시계탑 설치 20,000,000원 = 20,000

과목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2232 녹지관리		1,132,784	777,037	355,747	[국 98,000 균 0 기 0] [시 441,308 구 593,476]
100 경상예산		452,878	340,777	112,101	[국 0 균 0 기 0] [시 155,151 구 297,727]
110 인건비		406,662	297,511	109,151	[국 0 균 0 기 0] [시 155,151 구 251,511]
	101 인건비	406,662	297,511	109,151	
		406,662	297,511	109,151	10 일시사역인부임 ◎태화강둔치 꽃단지 조성관리 인부임[보조사업][성립전예산] 109,151,000원 = 109,151 (시) 109,151
120 경상적경비		46,216	43,266	2,950	
	201 일반운영비	30,416	29,866	550	
		30,416	29,866	550	01 일반운영비 ◎<급량비> ○녹지, 산림관리 업무추진 - 직원 4,150,000원-기정3,600,000원 = 550
	202 여비	15,800	13,400	2,400	

과목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15,800	13,400	2,400	01 국내여비 ◎<관내여비> O녹지, 산림관리 업무추진 - 직원 12,000,000원-기정9,600,000원 = 2,400
200 사업예산		676,037	436,260	239,777	[국 98,000 균 0 기 0] [시 286,157 구 291,880]
210 보조사업		579,537	339,760	239,777	[국 98,000 균 0 기 0] [시 286,157 구 195,380]
	201 일반운영비	9,566	0	9,566	
		9,566	0	9,566	01 일반운영비 ◎태화강둔치 꽃단지 조성관리 장비임차[성립전예산] 9,566,000원 = 9,566 (시) 9,566
	206 재료비	42,381	30,000	12,381	◎태화강둔치 꽃단지 조성관리 재료비[성립전예산] 12,381,000원 = 12,381 (시) 12,381
	401 시설비및부대비	527,590	309,760	217,830	
		525,760	309,760	216,000	01 시설비

과목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예산액	기정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도시숲(국·공유지)조성[의존재원성립전예산] 106,000,000원 = 106,000 (국) 53,000 (시) 26,500 (구) 26,500 ◎태화강둔치 잔디밭 조성[성립전예산] 110,000,000원 = 110,000 (시) 110,000
		1,830	0	1,830	03 시설부대비 ◎시설부대비 1,000,000원 = 1,000 ◎태화강둔치 잔디밭조성 시설부대비[성립전예산] 830,000원 = 830 (시) 830
400 예비비등		3,869	0	3,869	
420 기타		3,869	0	3,869	
	802 반환금기타	3,869	0	3,869	
		2,336	0	2,336	01 국고보조금반환금 ◎녹지분야 사용잔액 2,336,000원 = 2,336
		1,533	0	1,533	02 시·도비보조금반환금

과목 장.관.항.세항	과목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녹지분야 사용잔액 1,533,000원 = 1,533

과목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2300 사회보장비		40,347,029	37,894,635	2,452,394	[국 18,050,978 균 0 기 117,874] [시 15,216,884 구 6,961,293]
2310 생활지원		12,745,383	12,113,159	632,224	[국 9,843,760 균 0 기 0] [시 1,312,296 구 1,589,327]
2311 생활지원		820,567	148,887	671,680	[국 527,054 균 0 기 0] [시 126,918 구 166,595]
200 사업예산		693,431	31,612	661,819	[국 527,054 균 0 기 0] [시 126,918 구 39,459]
210 보조사업		693,431	31,612	661,819	[국 527,054 균 0 기 0] [시 126,918 구 39,459]
	201 일반운영비	6,000	0	6,000	
		6,000	0	6,000	01 일반운영비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운영비 6,000,000원 = 6,000 (국) 6,000
	301 일반보상금	39,062	31,612	7,450	
		39,062	31,612	7,450	09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업무보조(동) 공익근무요원인건비 39,062,000원-기정31,612,000원 = 7,450 [경 정] [기 정] [증 감] (시) 15,263 - 15,806 = △543 (구) 23,799 - 15,806 = 7,993
	307 민간이전	648,369	0	648,369	

과목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648,369	0	648,369	05 민간위탁금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648,369,000원 = 648,369 (국) 521,054 (시) 111,655 (구) 15,660
400 예비비등		9,861	0	9,861	
420 기타		9,861	0	9,861	
	802 반환금기타	9,861	0	9,861	
		9,861	0	9,861	02 시・도비보조금반환금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업무보조(동)공익근무요원인건비 사용잔액 9,860,850원 = 9,861

과목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2312 지원연계		168,450	179,348	△10,898	[국 14,544 균 0 기 0] [시 4,058 구 149,848]
100 경상예산		68,854	88,748	△19,894	[국 7,002 균 0 기 0] [시 0 구 61,852]
110 인건비		14,004	33,898	△19,894	[국 7,002 균 0 기 0] [시 0 구 7,002]
	101 인건비	14,004	33,898	△19,894	
		14,004	33,898	△19,894	10 일시사역인부임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보조사업) 14,004,000원-기정33,898,000원 = △19,894 [경 정] [기 정] [증 감] (국) 7,002 - 16,949 = △9,947 (구) 7,002 - 16,949 = △9,947
200 사업예산		97,742	90,600	7,142	[국 7,542 균 0 기 0] [시 4,058 구 86,142]
210 보조사업		22,142	15,000	7,142	[국 7,542 균 0 기 0] [시 4,058 구 10,542]
	201 일반운영비	17,084	10,500	6,584	
		17,084	10,500	6,584	01 일반운영비 ◎푸드뱅크사업 운영비 2,000,000원-기정2,500,000원 = △500 [경 정] [기 정] [증 감]

과목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시) 1,000 - 1,250 = △250 (구) 1,000 - 1,250 = △250 ◎자원봉사자 보험료 15,084,000원-기정8,000,000원 = 7,084 [경 정] [기 정] [증 감] (국) 7,542 - 4,000 = 3,542 (구) 7,542 - 4,000 = 3,542
	307 민간이전	4,000	4,500	△500	
		4,000	4,500	△500	02 민간경상보조 ◎푸드뱅크사업 운영비(나눔과 섬김의집) 2,000,000원-기정2,500,000원 = △500 [경 정] [기 정] [증 감] (시) 1,000 - 1,250 = △250 (구) 1,000 - 1,250 = △250
	405 자산취득비	1,058	0	1,058	
		1,058	0	1,058	01 자산및물품취득비 ◎푸드뱅크사업 장비지원비 1,058,000원 = 1,058 (시) 1,058
400 예비비등		1,854	0	1,854	
420 기타		1,854	0	1,854	

과목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802 반환금기타	1,854	0	1,854	
		1,847	0	1,847	01 국고보조금반환금 ◎자원봉사자보험료 사용잔액 1,847,000원 = 1,847
		7	0	7	02 시・도비보조금반환금 ◎푸드뱅크사업 사용잔액 7,000원 = 7

과목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2314 저소득주민보호		11,742,381	11,770,939	△28,558	[국 9,302,162 균 0 기 0] [시 1,181,320 구 1,258,899]
200 사업예산		11,658,028	11,735,867	△77,839	[국 9,302,162 균 0 기 0] [시 1,181,320 구 1,174,546]
210 보조사업		11,658,028	11,735,867	△77,839	[국 9,302,162 균 0 기 0] [시 1,181,320 구 1,174,546]
	301 일반보상금	11,040,116	11,063,358	△23,242	
		11,040,116	11,063,358	△23,242	01 사회보장적수혜금 ◎긴급지원 152,769,000원-기정176,011,000원 = △23,242 [경 정] [기 정] [증 감] (국) 122,215 - 140,809 = △18,594 (시) 15,277 - 17,601 = △2,324 (구) 15,277 - 17,601 = △2,324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9,401,094,000원-기정9,401,094,000원 = 0 [경 정] [기 정] [증 감] (국) 7,520,875 - 7,520,876 = △1 (시) 940,110 - 940,109 = 1 (구) 940,109 - 940,109 = 0 ◎기초수급자 교육급여 385,203,000원-기정385,203,000원 = 0 [경 정] [기 정] [증 감] (국) 308,162 - 308,163 = △1

과목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시) 38,521 - 38,520 = 1 (구) 38,520 - 38,520 = 0
	402 민간자본이전	445,856	500,453	△54,597	
		445,856	500,453	△54,597	02 민간대행사업비 ◎자활근로사업 429,856,000원-기정484,453,000원 = △54,597 [경 정] [기 정] [증 감] (국) 343,885 - 387,563 = △43,678 (시) 42,986 - 48,445 = △5,459 (구) 42,985 - 48,445 = △5,460
400 예비비등		49,281	0	49,281	
420 기타		49,281	0	49,281	
	802 반환금기타	49,281	0	49,281	
		43,070	0	43,070	01 국고보조금반환금 ◎자활사업 사용잔액 670,000원 = 670 ◎생활보장분야 사용잔액 37,201,000원 = 37,201 ◎긴급복지지원 사용잔액 5,199,000원 = 5,199
		6,211	0	6,211	02 시·도비보조금반환금

장:(2000)사회개발비 관:(2300)사회보장비 항:(2310)생활지원 세항:(2314)저소득주민보호 세세항:(420)기타 [남구본청][단위:천원]

과목		예산액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산출기초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생활보장분야 사용잔액	4,650,000원 =	4,650
					◎긴급복지지원 사용잔액	650,000원 =	650
					◎자활사업 사용잔액	911,000원 =	911

과목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2320 복지사업		27,601,646	25,781,476	1,820,170	[국 8,207,218 균 0 기 117,874] [시 13,904,588 구 5,371,966]
2321 사회복지		954,443	964,116	△9,673	[국 0 균 0 기 0] [시 394,380 구 560,063]
200 사업예산		833,772	850,475	△16,703	[국 0 균 0 기 0] [시 394,380 구 439,392]
210 보조사업		394,380	411,083	△16,703	[국 0 균 0 기 0] [시 394,380 구 0]
	307 민간이전	394,380	411,083	△16,703	
		394,380	411,083	△16,703	02 민간경상보조 ◎남구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275,364,000원-기정289,132,000원 = △13,768 [경 정] [기 정] [증 감] (시) 275,364 - 289,132 = △13,768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60,696,000원-기정63,731,000원 = △3,035 [경 정] [기 정] [증 감] (시) 60,696 - 63,731 = △3,035 ◎남구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19,000,000원-기정18,900,000원 = 100 [경 정] [기 정] [증 감] (시) 19,000 - 18,900 = 100

과목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400 예비비등		7,030	0	7,030	
420 기타		7,030	0	7,030	
	802 반환금기타	7,030	0	7,030	
		7,030	0	7,030	02 시・도비보조금반환금 ◎사회복지분야 사용잔액 7,030,000원 = 7,030

과목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2322 여성복지		1,568,640	1,608,828	△40,188	[국 489,394 균 0 기 117,874] [시 579,385 구 381,987]
200 사업예산		1,514,643	1,604,426	△89,783	[국 489,394 균 0 기 117,874] [시 579,385 구 327,990]
210 보조사업		1,508,843	1,598,626	△89,783	[국 489,394 균 0 기 117,874] [시 579,385 구 322,190]
	307 민간이전	624,250	714,033	△89,783	
		506,376	566,006	△59,630	02 민간경상보조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0원-기정56,700,000원 = △56,700 [경 정] [기 정] [증 감] (국) 0 - 39,690 = △39,690 (시) 0 - 17,010 = △17,010 ◎여성복지시설종사자 가계보조수당 지원 18,000,000원-15,600,000원 = 2,400 [경 정] [기 정] [증 감] (시) 18,000 - 15,600 = 2,400 ◎여성복지시설종사자 자격수당 지원 2,400,000원-기정3,360,000원 = △960 [경 정] [기 정] [증 감] (시) 2,400 - 3,360 = △960 ◎여성복지시설종사자 야간근무수당 지원

과목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4,320,000원-기정5,670,000원 = △1,350 [경 정] [기 정] [증 감] (시) 4,320 - 5,760 = △1,440 (구) 90 - 0 = 90 ◎시설운영비 추가지원 11,650,000원-기정14,670,000원 = △3,020 [경 정] [기 정] [증 감] (시) 11,650 - 14,670 = △3,020
		117,874	148,027	△30,153	05 민간위탁금 ◎가정폭력 행위자 교정,치료프로그램운영(복권기금) 21,004,000원-기정40,400,000원 = △19,396 [경 정] [기 정] [증 감] (기) 21,004 - 40,400 = △19,396 ◎성매매피해자 치료 회복프로그램 운영(복권기금) 16,800,000원-기정7,774,000원 = 9,026 [경 정] [기 정] [증 감] (기) 16,800 - 7,774 = 9,026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 0원-기정16,800,000원 = △16,800 [경 정] [기 정] [증 감] (기) 0 - 16,800 = △16,800

과목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성폭력피해자 직업훈련사업 0원-기정2,983,000원 = △2,983 [경 정] [기 정] [증 감] (기) 0 - 2,983 = △2,983
400 예비비등		49,595	0	49,595	
420 기타		49,595	0	49,595	
	802 반환금기타	49,595	0	49,595	
		43,018	0	43,018	01 국고보조금반환금 ◎여성복지분야 사용잔액 43,017,330원 = 43,018
		6,577	0	6,577	02 시·도비보조금반환금 ◎여성복지분야 사용잔액 6,576,010원 = 6,577

과목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2323 장애인복지		4,220,915	4,181,059	39,856	[국 1,672,703 균 0 기 0] [시 2,339,342 구 208,870]
200 사업예산		4,128,245	4,158,696	△30,451	[국 1,672,703 균 0 기 0] [시 2,339,342 구 116,200]
210 보조사업		4,084,545	4,114,996	△30,451	[국 1,672,703 균 0 기 0] [시 2,339,342 구 72,500]
	201 일반운영비	5,196	0	5,196	
		5,196	0	5,196	01 일반운영비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 2,430,000원 = 2,430 (국) 1,215 (구) 1,215 ◎장애인 활동 보조서비스 2,766,000원 = 2,766 (국) 1,936 (시) 830
	301 일반보상금	2,467,457	2,688,047	△220,590	
		2,467,457	2,688,047	△220,590	01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 25,200,000원-기정27,630,000원 = △2,430 [경 정] [기 정] [증 감] (국) 12,600 - 13,815 = △1,215 (구) 12,600 - 13,815 = △1,215

과목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0원-기정218,160,000원 = △218,160 [경 정] [기 정] [증 감] (국) 0 - 152,712 = △152,712 (시) 0 - 65,448 = △65,448
	307 민간이전	1,611,892	1,426,949	184,943	
		1,435,759	1,426,949	8,810	02 민간경상보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비 145,050,000원-기정166,740,000원 = △21,690 [경 정] [기 정] [증 감] (국) 71,025 - 81,870 = △10,845 (시) 72,525 - 83,370 = △10,845 (구) 1,500 - 1,500 = 0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교육기관,사업기관 교육비) 30,500,000원 = 30,500 (국) 21,350 (시) 9,150
		176,133	0	176,133	05 민간위탁금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사업비) 176,133,000원 = 176,133 (국) 123,293 (시) 52,840
400 예비비등		70,307	0	70,307	

과목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420 기타		70,307	0	70,307	
	802 반환금기타	70,307	0	70,307	
		1,327	0	1,327	01 국고보조금반환금 ◎장애인복지분야 사용잔액 1,326,300원 = 1,327
		68,980	0	68,980	02 시・도비보조금반환금 ◎장애인복지분야 사용잔액 68,979,350원 = 68,980

과목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2324 노인복지		7,740,959	7,708,757	32,202	[국 1,122,391 균 0 기 0] [시 3,751,959 구 2,866,609]
100 경상예산		106,800	99,300	7,500	
120 경상적경비		106,800	99,300	7,500	
	301 일반보상금	75,700	68,200	7,500	
		22,500	15,000	7,500	10 행사실비보상금 ◎어르신 문화유적지 탐방 7,500,000원 = 7,500
200 사업예산		7,388,916	7,509,457	△120,541	[국 1,122,391 균 0 기 0] [시 3,751,959 구 2,514,566]
210 보조사업		7,164,219	7,287,608	△123,389	[국 1,122,391 균 0 기 0] [시 3,751,959 구 2,289,869]
	301 일반보상금	3,555,041	3,586,155	△31,114	
		3,303,041	3,345,415	△42,374	01 사회보장적수혜금 ◎경로당 난방비 지급 98,500,000원-기정98,500,000원 = 0 [경 정] [기 정] [증 감] (시) 46,613 - 46,875 = △262 (구) 51,887 - 51,625 = 262 ◎경로당 운영비 지급 214,500,000원-214,500,000원 = 0

과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경 정] [기 정] [증 감] (시) 52,320 - 78,750 = △26,430 (구) 162,180 - 135,750 = 26,430 ◎경로연금 지급 608,776,000원-기정645,151,000원 = △36,375 [경 정] [기 정] [증 감] (국) 426,144 - 451,606 = △25,462 (시) 127,843 - 135,483 = △7,640 (구) 54,789 - 58,062 = △3,273 ◎노인교통비 지급 2,269,600,000원-2,269,599,000원 = 1 [경 정] [기 정] [증 감] (시) 1,134,800 - 1,134,800 = 0 (구) 1,134,800 - 1,134,799 = 1 ◎노인가장세대월동비 지원 22,500,000원-기정33,000,000원 = △10,500 [경 정] [기 정] [증 감] (시) 22,500 - 16,500 = 6,000 (구) 0 - 16,500 = △16,500 ◎독거노인 사랑의 우유배달사업 87,000,000원-기정82,500,000원 = 4,500 [경 정] [기 정] [증 감] (시) 43,500 - 41,250 = 2,250

과목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구) 43,500 - 41,250 = 2,250
		252,000	240,740	11,260	12 기타보상금 ◎노인일자리사업 246,000,000원-기정234,740,000원 = 11,260 [경 정] [기 정] [증 감] (국) 123,000 - 117,370 = 5,630 (시) 123,000 - 117,370 = 5,630
	307 민간이전	3,588,178	3,681,453	△93,275	
		2,398,221	2,590,444	△192,223	02 민간경상보조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전담인력인건비 지원 9,176,000원 = 9,176 (국) 4,588 (시) 4,588 ◎경로식당 운영비 지원 408,000,000원-기정378,700,000원 = 29,300 [경 정] [기 정] [증 감] (시) 288,000 - 255,623 = 32,377 (구) 120,000 - 123,077 = △3,077 ◎거동불편재가노인 식사배달 103,129,000원-기정94,875,000원 = 8,254 [경 정] [기 정] [증 감]

과목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시) 103,129 - 94,875 = 8,254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가정봉사파견)
					432,628,000원-기정626,750,000원 = △194,122
					[경 정] [기 정] [증 감]
					(시) 432,628 - 626,750 = △194,122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주간보호센터)
					298,508,000원-기정322,392,000원 = △23,884
					[경 정] [기 정] [증 감]
					(시) 298,508 - 322,392 = △23,884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단기보호센터)
					153,336,000원-기정177,710,000원 = △24,374
					[경 정] [기 정] [증 감]
					(시) 153,336 - 177,710 = △24,374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55,350,000원-기정59,400,000원 = △4,050
					[경 정] [기 정] [증 감]
					(시) 55,350 - 59,400 = △4,050
					◎소규모요양시설 운영비 지원(인구보건복지협회)
					249,460,000원-기정249,460,000원 = 0
					[경 정] [기 정] [증 감]
					(국) 0 - 74,830 = △74,830
					(시) 249,460 - 174,630 = 74,830

과목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차상위층 실비이용료 0원-기정76,673,000원 = △76,673 [경 정] [기 정] [증 감] (국) 0 - 53,716 = △53,716 (시) 0 - 22,957 = △22,957 ◎소규모요양시설 장비보강비(인구보건복지협회) 60,000,000원 = 60,000 (국) 30,000 (시) 30,000 ◎소규모요양시설 시비지원 운영비 13,480,000원 = 13,480 (시) 13,480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수당 10,670,000원 = 10,670 (시) 5,335 (구) 5,335
		1,129,957	1,031,009	98,948	05 민간위탁금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금 750,000,000원-기정650,000,000원 = 100,000 [경 정] [기 정] [증 감] (시) 120,000 - 200,000 = △80,000 (구) 630,000 - 450,000 = 180,000 ◎노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금 299,500,000원-기정277,350,000원 = 22,150

과목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경 정] [기 정] [증 감] (국) 149,750 - 138,675 = 11,075 (시) 149,750 - 138,675 = 11,075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 77,520,000원-기정103,659,000원 = △26,139 [경 정] [기 정] [증 감] (국) 54,264 - 72,561 = △18,297 (시) 11,628 - 15,549 = △3,921 (구) 11,628 - 15,549 = △3,921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 2,937,000원 = 2,937 (국) 2,056 (시) 881
	405 자산취득비	21,000	20,000	1,000	
		21,000	20,000	1,0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21,000,000원-기정20,000,000원 = 1,000 [경 정] [기 정] [증 감] (시) 10,500 - 10,000 = 500 (구) 10,500 - 10,000 = 500
220 자체사업		224,697	221,849	2,848	
	307 민간이전	160,697	157,849	2,848	

과목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107,446	104,598	2,848	02 민간경상보조 ◎노년시대 신문 구독료(대한노인회남구지회) 4,200원x113개소x6개월 = 2,848
400 예비비등		245,243	100,000	145,243	
420 기타		245,243	100,000	145,243	
	802 반환금기타	145,243	0	145,243	
		21,560	0	21,560	01 국고보조금반환금 ◎노인복지분야 사용잔액 21,559,610원 = 21,560
		123,683	0	123,683	02 시·도비보조금반환금 ◎노인복지분야 사용잔액 123,682,900원 = 123,683

과목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2325 아동복지		13,116,689	11,318,716	1,797,973	[국 4,922,730 균 0 기 0] [시 6,839,522 구 1,354,437]
200 사업예산		12,732,794	11,280,516	1,452,278	[국 4,922,730 균 0 기 0] [시 6,839,522 구 970,542]
210 보조사업		12,627,003	11,174,725	1,452,278	[국 4,922,730 균 0 기 0] [시 6,839,522 구 864,751]
	301 일반보상금	866,782	476,122	390,660	
		862,020	471,360	390,660	01 사회보장적수혜금 ◎아동급식비 지원 500,400,000원-기정426,000,000원 = 74,400 [경 정] [기 정] [증 감] (시) 375,300 - 319,500 = 55,800 (구) 125,100 - 106,500 = 18,600 ◎아동급식비 지원(학기중 토,일,공휴일) 316,350,000원 = 316,350 (시) 316,350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수학여행,수련비 경비지원 510,000원-기정600,000원 = △90 [경 정] [기 정] [증 감] (시) 357 - 420 = △63 (구) 153 - 180 = △27
	307 민간이전	11,730,221	10,668,603	1,061,618	

과목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11,730,221	10,668,603	1,061,618	02 민간경상보조
					◎지역아동센터(공부방) 운영
					240,000,000원-기정144,000,000원 = 96,000
					[경 정] [기 정] [증 감]
					(국) 120,000 - 72,000 = 48,000
					(시) 120,000 - 72,000 = 48,000
					◎지역아동센터(공부방) 운영
					0원-기정40,000,000원 = △40,000
					[경 정] [기 정] [증 감]
					(시) 0 - 20,000 = △20,000
					(구) 0 - 20,000 = △20,000
					◎요보호아동 그룹홈 보호비 지원
					111,090,000원-기정37,132,000원 = 73,958
					[경 정] [기 정] [증 감]
					(국) 44,436 - 14,854 = 29,582
					(시) 66,654 - 22,278 = 44,376
					◎울산양육원 운영비
					475,891,000원-기정970,347,000원 = △494,456
					[경 정] [기 정] [증 감]
					(시) 475,891 - 970,347 = △494,456
					◎울산양육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0원-기정10,000,000원 = △10,000

과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경 정] [기 정] [증 감] (시) 0 - 10,000 = △10,000 ◎울산양육원 취사부 인건비 19,692,000원-37,386,000원 = △17,694 [경 정] [기 정] [증 감] (시) 9,346 - 18,693 = △9,347 (구) 10,346 - 18,693 = △8,347 ◎울산양육원 종사자 수당 지원 51,120,000원-기정102,240,000원 = △51,120 [경 정] [기 정] [증 감] (시) 51,120 - 102,240 = △51,120 ◎울산양육원 종사자 자질향상 및 직무교육 1,000,000원-기정2,000,000원 = △1,000 [경 정] [기 정] [증 감] (시) 1,000 - 2,000 = △1,000 ◎울산양육원 보호비 추가지원 18,100,000원-기정32,700,000원 = △14,600 [경 정] [기 정] [증 감] (시) 18,100 - 32,700 = △14,600 ◎울산양육원 아동 심성관리비(학습보조비) 29,820,000원-기정59,640,000원 = △29,820

과목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경 정] [기 정] [증 감] (시) 29,820 - 59,640 = △29,820 ◎울산양육원 퇴소아동 전세자금 및 생활용품비 0원-기정32,000,000원 = △32,000 [경 정] [기 정] [증 감] (시) 0 - 32,000 = △32,000 ◎울산양육원 하계수련경비 0원-기정7,700,000원 = △7,700 [경 정] [기 정] [증 감] (시) 0 - 7,700 = △7,700 ◎울산양육원 취업예정아동 직업훈련비 0원-기정4,000,000원 = △4,000 [경 정] [기 정] [증 감] (시) 0 - 4,000 = △4,000 ◎입양기관 인건비 및 운영비 10,500,000원-기정28,066,000원 = △17,566 [경 정] [기 정] [증 감] (시) 10,500 - 28,066 = △17,566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2,456,054,000원-기정3,841,360,000원 = △1,385,306 [경 정] [기 정] [증 감] (국) 1,228,027 - 1,920,680 = △692,653

과목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시) 1,228,027 - 1,920,680 = △692,653
					◎민간시설 교재교구비 지원
					173,000,000원-기정180,000,000원 = △7,000
					[경 정] [기 정] [증 감]
					(국) 86,500 - 90,000 = △3,500
					(시) 43,250 - 45,000 = △1,750
					(구) 43,250 - 45,000 = △1,750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4,828,000원-기정3,600,000원 = 1,228
					[경 정] [기 정] [증 감]
					(국) 2,414 - 1,800 = 614
					(시) 1,207 - 900 = 307
					(구) 1,207 - 900 = 307
					◎보육료 지원
					4,693,958,000원-기정3,555,012,000원 = 1,138,946
					[경 정] [기 정] [증 감]
					(국) 2,346,979 - 1,777,506 = 569,473
					(시) 2,346,979 - 1,777,506 = 569,473
					◎보육 인프라구축(평가인증지원)[의존재원성립전예산]
					45,500,000원 = 45,500
					(국) 22,750
					(시) 11,375
					(구) 11,375
					◎영아 기본보조금[성립전예산] 1,938,248,000원 = 1,938,248

과목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국) 969,124 (시) 969,124 ◎시설수급자 생계비 100,000,000원-기정220,000,000원 = △120,000 [경 정] [기 정] [증 감] (국) 80,000 - 176,000 = △96,000 (시) 10,000 - 22,000 = △12,000 (구) 10,000 - 22,000 = △12,000
400 예비비등		345,695	0	345,695	
420 기타		345,695	0	345,695	
	802 반환금기타	345,695	0	345,695	
		55,503	0	55,503	01 국고보조금반환금 ◎아동복지분야 사용잔액 55,502,170원 = 55,503
		290,192	0	290,192	02 시・도비보조금반환금 ◎아동복지분야 사용잔액 290,191,170원 = 290,192

과목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2400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		10,160,447	9,783,010	377,437	[국 3,930 균 210,000 기 0] [시 12,858 구 9,933,659]
2410 주택사업		541,596	485,453	56,143	[국 0 균 0 기 0] [시 10,500 구 531,096]
2414 건축지도		148,039	144,396	3,643	
100 경상예산		148,039	144,396	3,643	
110 인건비		125,422	121,779	3,643	
	101 인건비	125,422	121,779	3,643	
		108,604	104,961	3,643	09 일용인부임 ◎무허가건축물 단속원 ○기본급 41,300원x4명x246일-기정39,532,000원 = 1,108 ○근속가산금 170,000원x4명x12월-기정7,680,000원 = 480 ○상여금 40,640,000원x4/12-기정13,178,000원 = 369 ○유급휴일수당 47,703원x4명x119일-기정21,113,000원 = 1,594 ○가계보조비 40,640,000원x1/12-기정3,295,000원 = 92

과목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예산액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산출기초
2415 도시미관관리		111,950	59,450	52,500	[국 0 균 0 기 0] [시 10,500 구 101,450]
200 사업예산		85,795	33,295	52,500	[국 0 균 0 기 0] [시 10,500 구 75,295]
210 보조사업		10,500	0	10,500	[국 0 균 0 기 0] [시 10,500 구 0]
	206 재료비	10,500	0	10,500	◎벽보부착 방지판 구입[성립전예산] 100,000원x105개 = 10,500 (시) 10,500
220 자체사업		75,295	33,295	42,000	
	307 민간이전	61,280	31,280	30,000	
		61,280	31,280	30,000	05 민간위탁금 ◎불법고정광고물 정비 용역비 30,000,000원 = 3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2,000	0	12,000	
		12,000	0	12,000	01 시설비 ◎현수막게시대 이전 설치 3,000,000원x4개소 = 12,000

과목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2420 도시개발		9,618,851	9,297,557	321,294	[국 3,930 균 210,000 기 0] [시 2,358 구 9,402,563]
2421 도시행정		534,120	230,151	303,969	[국 0 균 210,000 기 0] [시 0 구 324,120]
100 경상예산		234,120	230,151	3,969	
110 인건비		142,762	138,793	3,969	
	101 인건비	142,762	138,793	3,969	
		101,317	97,515	3,802	02 수당 ◎시간외근무수당 90,881,000원-기정87,079,000원 = 3,802
		41,445	41,278	167	08 기타직보수 ◎GB감시 청원경찰 O급여 1,890,000원x1명x12월-기정22,559,000원 = 121 O정근수당 22,680,000원x0.9/12-기정1,692,000원 = 9 O명절휴가비 22,680,000원x1.2/12-기정2,256,000원 = 12 O가계지원비 22,680,000원x2/12-기정3,760,000원 = 20

과목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연가보상비 22,680,000원x17/360-기정1,066,000원 = 5
200 사업예산		300,000	0	300,000	[국 0 균 210,000 기 0] [시 0 구 90,000]
210 보조사업		300,000	0	300,000	[국 0 균 210,000 기 0] [시 0 구 9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300,000	0	300,000	
		300,000	0	300,000	01 시설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300,000,000원 = 300,000 (균) 210,000 (구) 90,000

장:(2000)사회개발비 관:(2400)주택및지역사회개발 항:(2420)도시개발 세항:(2422)지적관리 세세항:(210)보조사업 [남구본청][단위:천원]

과목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2422 지적관리		119,904	110,079	9,825	[국 3,930 균 0 기 0] [시 2,358 구 113,616]
200 사업예산		58,225	48,400	9,825	[국 3,930 균 0 기 0] [시 2,358 구 51,937]
210 보조사업		9,825	0	9,825	[국 3,930 균 0 기 0] [시 2,358 구 3,537]
	201 일반운영비	9,825	0	9,825	
		9,825	0	9,825	01 일반운영비 ◎지적경계정비대상지 조사비 9,825,000원 = 9,825 (국) 3,930 (시) 2,358 (구) 3,537

과목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2423 부동산관리		54,234	46,734	7,500	
100 경상예산		50,496	42,996	7,500	
120 경상적경비		46,430	38,930	7,500	
	201 일반운영비	28,770	21,270	7,500	
		28,770	21,270	7,500	01 일반운영비 ◎도로명주소사업 홍보 O홍보물 제작 500원x15,000부 = 7,500

과목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3000 경제개발비		12,935,859	11,588,429	1,347,430	[국 912,654 균 2,401,000 기 0] [시 1,945,681 구 7,676,524]
3100 농수산개발비		794,744	191,358	603,386	[국 430,664 균 0 기 0] [시 94,767 구 269,313]
3110 농수산관리		794,744	191,358	603,386	[국 430,664 균 0 기 0] [시 94,767 구 269,313]
3111 산업관리		794,744	191,358	603,386	[국 430,664 균 0 기 0] [시 94,767 구 269,313]
100 경상예산		25,035	22,320	2,715	[국 0 균 0 기 0] [시 870 구 24,165]
110 인건비		2,715	0	2,715	[국 0 균 0 기 0] [시 870 구 1,845]
	101 인건비	2,715	0	2,715	
		2,715	0	2,715	10 일시사역인부임 ◎폐영농자재 완전수거 대책사업[보조사업] ○인부임[의존재원성립전예산] 2,715,000원 = 2,715 (시) 870 (구) 1,845
200 사업예산		700,988	169,038	531,950	[국 430,664 균 0 기 0] [시 93,897 구 176,427]
210 보조사업		645,756	122,106	523,650	[국 430,664 균 0 기 0] [시 93,897 구 121,195]
	201 일반운영비	1,152	1,152	0	

장:(3000)경제개발비 관:(3100)농수산개발비 항:(3110)농수산관리 세항:(3111)산업관리 세세항:(210)보조사업 [남구본청][단위:천원]

과목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1,152	1,152	0	01 일반운영비 ◎농업유통정보지 공급사업 1,152,000원-기정1,152,000원 = 0 [경 정] [기 정] [증 감] (시) 230 - 576 = △346 (구) 922 - 576 = 346
	206 재료비	1,900	1,000	900	◎축산물수거검사 시료비 지원 900,000원 = 900 (국) 450 (구) 450
	301 일반보상금	17,763	8,220	9,543	
		2,400	0	2,400	01 사회보장적수혜금 ◎농업인 영유아자녀 양육비(1명 GB지역) 2,400,000원 = 2,400 (국) 1,200 (시) 600 (구) 600
		2,750	0	2,750	02 장학금및학자금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2명 GB지역) 2,750,000원 = 2,750 (시) 1,540 (구) 1,210

과목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12,613	8,220	4,393	12 기타보상금 ◎폐영농자재 완전수거 대책사업 O폐비닐교환 보상금 2,923,000원 = 2,923 (시) 936 (구) 1,987 ◎공수의 예찰활동비 8,400,000원-기정7,200,000원 = 1,200 [경 정] [기 정] [증 감] (시) 4,200 - 3,600 = 600 (구) 4,200 - 3,600 = 600 ◎폐비닐.농약빈병 수집장려금(환경관리과) 270,000원 = 270 (국) 270
	307 민간이전	126,500	104,500	22,000	
		126,500	104,500	22,000	01 의료및구료비 ◎유기동물운영 및 위탁보호비 115,000,000원-기정95,000,000원 = 20,000 [경 정] [기 정] [증 감] (시) 46,000 - 47,500 = △1,500 (구) 69,000 - 47,500 = 21,500

과목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유기동물 사체 처리비 11,500,000원-기정9,500,000원 = 2,000 [경 정] [기 정] [증 감] (시) 4,600 - 4,750 = △150 (구) 6,900 - 4,750 = 2,150
	402 민간자본이전	497,941	7,234	490,707	
		497,941	7,234	490,707	01 민간자본보조 ◎2006년 친환경 농업직접지불 보조금[성립전예산] 290,000원 = 290 (국) 290 ◎축산분뇨 톱밥지원사업 945,000원-기정1,512,000원 = △567 [경 정] [기 정] [증 감] (시) 405 - 756 = △351 (구) 540 - 756 = △216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5,981,000원-기정5,722,000원 = 259 [경 정] [기 정] [증 감] (국) 4,785 - 4,577 = 208 (시) 598 - 572 = 26 (구) 598 - 573 = 25

과목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	15,260,000원 =	15,260
						(시)	7,630
						(구)	7,630
					◎쌀소득등 보전직불 고정형직불제	222,669,000원 =	222,669
						(국)	222,669
					◎울산지역 쌀포장재 지원사업	2,296,000원 =	2,296
						(시)	1,148
						(구)	1,148
					◎친환경 농업직불제 보조금	500,000원 =	500
						(국)	500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250,000,000원 =	250,000
						(국)	200,000
						(시)	25,000
						(구)	25,000
	405 자산취득비	500	0	500			
		500	0	5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쌀소득 보전직불제 행정비		
					○디지털 카메라 구입	500,000원 =	500
						(국)	500
220 자체사업		55,232	46,932	8,300			

과목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206 재료비	11,250	11,450	△200	◎축산물 수거검사 시료구입 0원-기정200,000원 = △200
	401 시설비및부대비	8,500	0	8,500	
		8,500	0	8,500	01 시설비 ◎옥동 농업용관정 수중모터 교체 8,500,000원 = 8,500
400 예비비등		68,721	0	68,721	
420 기타		68,721	0	68,721	
	802 반환금기타	68,721	0	68,721	
		685	0	685	01 국고보조금반환금 ◎쌀소득등보전직불제외 1개사업 사용잔액 685,000원 = 685
		68,036	0	68,036	02 시·도비보조금반환금 ◎폐영농자재수거대책비 외4개사업 사용잔액 68,036,000원 = 68,036

과목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3200 지역경제개발비		2,921,521	2,684,441	237,080	[국 21,821 균 813,000 기 0] [시 842,054 구 1,244,646]
3210 지역경제개발및기업지원		2,527,330	2,346,165	181,165	[국 21,821 균 813,000 기 0] [시 692,054 구 1,000,455]
3211 지역경제관리		2,012,874	1,711,460	301,414	[국 0 균 813,000 기 0] [시 378,000 구 821,874]
100 경상예산		145,820	142,460	3,360	
120 경상적경비		71,582	68,222	3,360	
	201 일반운영비	37,362	34,002	3,360	
		37,362	34,002	3,360	01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O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 70,000원x19명x2회 = 2,660 O물가대책실무위원회 참석수당 70,000원x5명x2회 = 700
400 예비비등		298,054	0	298,054	
420 기타		298,054	0	298,054	
	802 반환금기타	298,054	0	298,054	

과목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예산액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산출기초
		235,616	0	235,616	01 국고보조금반환금 ◎야음시장상가 아케이드사업 사용잔액 235,616,000원 = 235,616
		62,438	0	62,438	02 시・도비보조금반환금 ◎야음시장상가 아케이드사업 사용잔액 62,438,000원 = 62,438

과목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3212 기업지원		62,613	59,445	3,168	[국 0 균 0 기 0] [시 33,660 구 28,953]
400 예비비등		3,168	0	3,168	
420 기타		3,168	0	3,168	
	802 반환금기타	3,168	0	3,168	
		3,168	0	3,168	02 시・도비보조금반환금 ◎기초생활수급자 가스시설개선사업 사용잔액 3,168,000원 = 3,168

과목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3213 실업대책		451,843	575,260	△123,417	[국 21,821 균 0 기 0] [시 280,394 구 149,628]
100 경상예산		397,559	518,484	△120,925	[국 0 균 0 기 0] [시 253,439 구 144,120]
110 인건비		395,559	518,484	△122,925	[국 0 균 0 기 0] [시 253,439 구 142,120]
	101 인건비	395,559	518,484	△122,925	
		395,559	518,484	△122,925	10 일시사역인부임 ◎공공근로사업인부임(보조사업) 395,559,000원-기정518,484,000원 = △122,925 [경 정] [기 정] [증 감] (시) 253,439 - 358,589 = △105,150 (구) 142,120 - 159,895 = △17,775
120 경상적경비		2,000	0	2,000	
	301 일반보상금	2,000	0	2,000	
		2,000	0	2,000	12 기타보상금 ◎청소년직장체험 연수수당 50,000원x20명x2회 = 2,000
200 사업예산		51,776	56,776	△5,000	[국 21,821 균 0 기 0] [시 26,955 구 3,000]
210 보조사업		51,776	56,776	△5,000	[국 21,821 균 0 기 0] [시 26,955 구 3,000]

과목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206 재료비	10,000	15,000	△5,000	◎공공근로사업 재료비 10,000,000원-기정15,000,000원 = △5,000 [경 정] [기 정] [증 감] (시) 7,000 - 10,500 = △3,500 (구) 3,000 - 4,500 = △1,500
400 예비비등		2,508	0	2,508	
420 기타		2,508	0	2,508	
	802 반환금기타	2,508	0	2,508	
		2,006	0	2,006	01 국고보조금반환금 ◎고용촉진훈련사업 사용잔액 2,005,600원 = 2,006
		502	0	502	02 시・도비보조금반환금 ◎고용촉진훈련사업 사용잔액 501,400원 = 502

과목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3220 관광관리		394,191	338,276	55,915	[국 0 균 0 기 0] [시 150,000 구 244,191]
3221 관광관리		394,191	338,276	55,915	[국 0 균 0 기 0] [시 150,000 구 244,191]
100 경상예산		43,226	38,276	4,950	
120 경상적경비		39,400	34,450	4,950	
	201 일반운영비	29,000	27,650	1,350	
		29,000	27,650	1,350	01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O고래축제 초청외국인 통역비 150,000원x3명x3일 = 1,350
	301 일반보상금	5,100	1,500	3,600	
		3,600	0	3,600	08 외빈초청여비 ◎고래축제 초청외빈 식대 30,000원x40명x3식 = 3,600
200 사업예산		350,000	300,000	50,000	[국 0 균 0 기 0] [시 150,000 구 200,000]
210 보조사업		350,000	300,000	50,000	[국 0 균 0 기 0] [시 150,000 구 200,000]
	307 민간이전	350,000	300,000	50,000	

과목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350,000	300,000	50,000	02 민간경상보조 ◎제13회 울산고래축제 지원(홍보비) 350,000,000원-기정300,000,000원 = 50,000 [경 정] [기 정] [증 감] (시) 150,000 - 150,000 = 0 (구) 200,000 - 150,000 = 50,000
400 예비비등		965	0	965	
420 기타		965	0	965	
	802 반환금기타	965	0	965	
		643	0	643	01 국고보조금반환금 ◎관광안내표지판 사용잔액 642,500원 = 643
		322	0	322	02 시·도비보조금반환금 ◎관광안내표지판 사용잔액 321,250원 = 322

과목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3300 국토자원보존개발비		8,758,458	8,351,928	406,530	[국 410,169 균 1,588,000 기 0] [시 958,860 구 5,801,429]
3310 산림자원관리		1,655,179	1,387,556	267,623	[국 400,219 균 0 기 0] [시 157,910 구 1,097,050]
3311 산림관리		1,655,179	1,387,556	267,623	[국 400,219 균 0 기 0] [시 157,910 구 1,097,050]
100 경상예산		539,021	537,534	1,487	[국 99,610 균 0 기 0] [시 29,129 구 410,282]
110 인건비		477,578	477,171	407	[국 99,610 균 0 기 0] [시 29,129 구 348,839]
	101 인건비	477,578	477,171	407	
		35,698	35,291	407	08 기타직보수 ◎산림감시 청원경찰 O급여 1,552,200원x1명x12월-기정18,334,000원 = 293 O정근수당 18,627,000원x0.9/12-기정1,376,000원 = 22 O명절휴가비 18,627,000원x1.2/12-기정1,834,000원 = 29 O가계지원비 18,627,000원x2/12-기정3,056,000원 = 49 O연가보상비

과목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18,627,000원x17/360-기정866,000원 = 14
		441,880	441,880	0	10 일시사역인부임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인부임[보조사업] 37,443,000원-기정37,442,000원 = 1 [경 정] [기 정] [증 감] (국) 26,210 - 26,210 = 0 (시) 3,370 - 3,370 = 0 (구) 7,863 - 7,862 = 1 ◎산림병해충 방제[보조사업] ○예찰조사원 12,395,000원-기정12,396,000원 = △1 [경 정] [기 정] [증 감] (국) 5,152 - 5,153 = △1 (시) 2,173 - 2,173 = 0 (구) 5,070 - 5,070 = 0
120 경상적경비		61,443	60,363	1,080	
	301 일반보상금	19,670	18,590	1,080	
		17,670	16,590	1,080	09 공익근무요원보상금 ◎근무화 30,000원x36명 = 1,080
200 사업예산		1,082,921	850,022	232,899	[국 300,609 균 0 기 0] [시 128,781 구 653,531]

과목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210 보조사업		660,217	728,318	△68,101	[국 300,609 균 0 기 0] [시 128,781 구 230,827]
	201 일반운영비	15,180	13,180	2,000	
		15,180	13,180	2,000	01 일반운영비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장비 및 피복 구입비 2,000,000원 = 2,000 (국) 1,400 (시) 180 (구) 420
	202 여비	3,836	7,336	△3,500	
		3,836	7,336	△3,500	01 국내여비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부대비 896,000원-기정4,396,000원 = △3,500 [경 정] [기 정] [증 감] (국) 627 - 3,077 = △2,450 (시) 81 - 396 = △315 (구) 188 - 923 = △735
	301 일반보상금	9,100	11,600	△2,500	
		3,100	1,600	1,500	10 행사실비보상금 ◎도시녹지관리원 교육훈련비 1,500,000원 = 1,500

과목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국) 1,050 (시) 135 (구) 315
		6,000	10,000	△4,000	12 기타보상금 ◎명예감시원 6,000,000원-기정10,000,000원 = △4,000 [경 정] [기 정] [증 감] (국) 4,200 - 7,000 = △2,800 (시) 540 - 900 = △360 (구) 1,260 - 2,100 = △840
	401 시설비및부대비	615,596	680,302	△64,706	
		614,596	680,302	△65,706	01 시설비 ◎조림지 사후관리 32,544,000원-기정32,589,000원 = △45 [경 정] [기 정] [증 감] (국) 18,080 - 18,105 = △25 (시) 4,339 - 4,345 = △6 (구) 10,125 - 10,139 = △14 ◎숲가꾸기 291,047,000원-기정358,895,000원 = △67,848 [경 정] [기 정] [증 감] (국) 161,693 - 199,386 = △37,693 (시) 38,806 - 47,853 = △9,047

과목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구) 90,548 - 111,656 = △21,108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파쇄
					77,652,000원-기정90,798,000원 = △13,146
					[경 정] [기 정] [증 감]
					(국) 54,784 - 63,987 = △9,203
					(시) 6,860 - 8,043 = △1,183
					(구) 16,008 - 18,768 = △2,760
					◎소나무재선충 나무주사 15,841,000원 = 15,841
					(국) 15,064
					(시) 233
					(구) 544
					◎지효성 방제 508,000원-기정1,024,000원 = △516
					[경 정] [기 정] [증 감]
					(국) 234 - 480 = △246
					(시) 82 - 163 = △81
					(구) 192 - 381 = △189
					◎속효성 방제 1,004,000원-기정996,000원 = 8
					[경 정] [기 정] [증 감]
					(국) 456 - 451 = 5
					(시) 164 - 163 = 1
					(구) 384 - 382 = 2
		1,000	0	1,000	03 시설부대비

과목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숲가꾸기사업 1,000,000원 = 1,000
	405 자산취득비	605	0	605	
		605	0	605	01 자산및물품취득비 ◎동력천공기 605,000원 = 605 (국) 303 (시) 90 (구) 212
220 자체사업		422,704	121,704	301,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321,324	20,324	301,000	
		320,000	20,000	300,000	01 시설비 ◎순환산책로 정비[2006.12.28 특별교부세 비도변경] 300,000,000원 = 300,000
		1,324	324	1,000	03 시설부대비 ◎순환산책로 정비 1,000,000원 = 1,000
400 예비비등		33,237	0	33,237	
420 기타		33,237	0	33,237	

과목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802 반환금기타	33,237	0	33,237	
		27,484	0	27,484	01 국고보조금반환금
					◎산림분야 사용잔액 27,484,000원 = 27,484
		5,753	0	5,753	02 시・도비보조금반환금
					◎산림분야 사용잔액 5,753,000원 = 5,753

과목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3320 치수및재난관리		4,016,672	4,005,099	11,573	[국 9,950 균 1,588,000 기 0] [시 800,950 구 1,617,772]
3321 치수관리		3,559,216	3,557,941	1,275	[국 0 균 1,588,000 기 0] [시 791,000 구 1,180,216]
100 경상예산		441,502	440,227	1,275	
110 인건비		168,324	167,049	1,275	
	101 인건비	168,324	167,049	1,275	
		40,899	40,289	610	08 기타직보수 ◎하천감시 청원경찰 O급여 1,759,800원x1명x12월-기정20,763,000원 = 355 O정근수당 21,094,000원x0.9/12-기정1,558,000원 = 25 O명절휴가비 21,094,000원x1.2/12-기정2,077,000원 = 33 O연가보상비 21,094,000원x17/360-기정981,000원 = 16 O가계지원비 21,094,000원x2/12-기정3,461,000원 = 55

과목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자녀학비수당 401,040원x1명x4회-기정1,479,000원 = 126
		25,740	25,075	665	09 일용인부임 ◎배수장관리 기계원 ○기본급 41,300원x1명x246일-기정9,883,000원 = 277 ○상여금 10,160,000원x4/12-기정3,295,000원 = 92 ○유급휴일수당 44,584원x1명x119일-기정5,047,000원 = 259 ○연차수당 44,584원x1명x10일-기정432,000원 = 14 ○가계보조비 10,160,000원x1/12-기정824,000원 = 23

장:(3000)경제개발비 관:(3300)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3320)치수및재난관리 세항:(3322)재난관리 세세항:(110)인건비 [남구본청][단위:천원]

과목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3322 재난관리		351,949	359,551	△7,602	
100 경상예산		114,807	122,409	△7,602	
110 인건비		58,744	66,346	△7,602	
	101 인건비	58,744	66,346	△7,602	
		58,744	66,346	△7,602	02 수당 ◎시간외근무수당 58,744,000원-기정66,346,000원 = △7,602

과목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3323 복구지원		55,097	57,097	△2,000	
100 경상예산		51,767	53,767	△2,000	
120 경상적경비		51,767	53,767	△2,000	
	201 일반운영비	29,412	30,512	△1,100	
		29,412	30,512	△1,100	01 일반운영비 ◎<급량비> ○복구지원 업무추진 1,300,000원-기정2,400,000원 = △1,100
	202 여비	6,880	11,280	△4,400	
		6,880	11,280	△4,400	01 국내여비 ◎<관내여비> ○복구지원 업무추진 5,200,000원-기정9,600,000원 = △4,400
	301 일반보상금	15,475	11,975	3,500	
		350	0	350	10 행사실비보상금

과목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지역자율방재단 교육강사수당 70,000원x5회 = 350
		15,125	11,975	3,150	12 기타보상금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O피복비
					- 우의 15,000원x210벌 = 3,150

과목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3324 안전관리		50,410	30,510	19,900	[국 9,950 균 0 기 0] [시 9,950 구 30,510]
200 사업예산		19,900	0	19,900	[국 9,950 균 0 기 0] [시 9,950 구 0]
210 보조사업		19,900	0	19,900	[국 9,950 균 0 기 0] [시 9,950 구 0]
	201 일반운영비	19,900	0	19,900	
		19,900	0	19,900	01 일반운영비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19,900,000원 = 19,900 (국) 9,950 (시) 9,950

과목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3330 건설관리		3,015,872	2,864,033	151,839	
3331 건설행정		2,032,418	1,971,251	61,167	
100 경상예산		1,219,286	1,210,727	8,559	
110 인건비		298,356	293,157	5,199	
	101 인건비	298,356	293,157	5,199	
		162,476	157,277	5,199	08 기타직보수 ◎노점삼,노상적치물 청원경찰 O급여 1,757,800원x4명x12월-기정83,050,000원 = 1,325 O정근수당 84,375,000원x0.9/12-기정6,229,000원 = 100 O명절휴가비 84,375,000원x1.2/12-기정8,305,000원 = 133 O연가보상비 84,375,000원x17/360-기정3,922,000원 = 63 O가계지원비 84,375,000원x2/12-기정13,842,000원 = 221

과목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자녀학비수당 - 중학교 49,620원x1명x12월-기정573,000원 = 23 - 고등학교 401,040원x1명x12월-기정1,479,000원 = 3,334
120 경상적경비		920,930	917,570	3,360	
	201 일반운영비	863,565	860,205	3,360	
		863,565	860,205	3,360	01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지역건설활성화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70,000원x4회x12명 = 3,360
200 사업예산		778,524	730,524	48,000	
220 자체사업		778,524	730,524	48,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778,524	730,524	48,000	
		776,500	728,500	48,000	01 시설비 ◎가로정비 수벽설치

과목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광나무 5,000원x15본x640m = 48,000
400 예비비등		34,608	30,000	4,608	
420 기타		34,608	30,000	4,608	
	802 반환금기타	4,608	0	4,608	
		4,608	0	4,608	02 시・도비보조금반환금 ◎장생포로외 2개노선 가로등누전선로 복구공사 사용잔액 4,607,100원 = 4,608

과목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3332 도로건설		983,454	892,782	90,672	
100 경상예산		363,804	358,132	5,672	
110 인건비		290,526	284,854	5,672	
	101 인건비	290,526	284,854	5,672	
		85,044	84,914	130	08 기타직보수 ◎과적차량 단속 청원경찰 O급여 1,909,900원x2명x12월-기정45,744,000원 = 94 O정근수당 45,838,000원x0.9/12-기정3,431,000원 = 7 O명절휴가비 45,838,000원x1.2/12-기정4,575,000원 = 9 O연가보상비 45,838,000원x17/360-기정2,161,000원 = 4 O가계지원비 45,838,000원x2/12-기정7,624,000원 = 16
		205,482	199,940	5,542	09 일용인부임

과목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수로원 O기본급 41,300원x8명x246일-기정79,063,000원 = 2,216 O상여금 81,279,000원x4/12-기정26,355,000원 = 738 O가족수당 - 배우자 30,000원x8명x12월-기정2,160,000원 = 720 O유급휴일수당 44,277원x8명x119일-기정40,376,000원 = 1,776 O연차수당 44,277원x8명x10일-기정3,451,000원 = 92
200 사업예산		619,650	534,650	85,000	
220 자체사업		619,650	534,650	85,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582,390	497,390	85,000	
		102,390	17,390	85,000	03 시설부대비 ◎두왕동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편입부지 분할측량비 85,000,000원 = 85,000

장:(3000)경제개발비 관:(3300)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3340)시설지원 세항:(3341)시설행정 세세항:(110)인건비 [남구본청][단위:천원]

과목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3340 시설지원		70,735	95,240	△24,505	
3341 시설행정		56,575	81,080	△24,505	
100 경상예산		56,575	81,080	△24,505	
110 인건비		30,754	49,759	△19,005	
	101 인건비	30,754	49,759	△19,005	
		30,754	49,759	△19,005	02 수당 ◎시간외근무수당 30,754,000원-기정49,759,000원 = △19,005
120 경상적경비		25,821	31,321	△5,500	
	201 일반운영비	13,941	15,041	△1,100	
		13,941	15,041	△1,100	01 일반운영비 ◎<급량비> ○시설행정 업무추진 1,300,000원-기정2,400,000원 = △1,100
	202 여비	6,880	11,280	△4,400	
		6,880	11,280	△4,400	01 국내여비

장:(3000)경제개발비 관:(3300)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3340)시설지원 세항:(3341)시설행정 세세항:(120)경상적경비 [남구본청][단위:천원]

과목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관내여비> ○시설행정 업무추진 5,200,000원-기정9,600,000원 = △4,400

과목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3400 교통관리비		461,136	360,702	100,434	[국 50,000 균 0 기 0] [시 50,000 구 361,136]
3410 교통관리		461,136	360,702	100,434	[국 50,000 균 0 기 0] [시 50,000 구 361,136]
3411 교통행정		332,063	231,629	100,434	[국 50,000 균 0 기 0] [시 50,000 구 232,063]
200 사업예산		150,166	50,166	100,000	[국 50,000 균 0 기 0] [시 50,000 구 50,166]
210 보조사업		100,000	0	100,000	[국 50,000 균 0 기 0] [시 50,000 구 0]
	401 시설비및부대비	100,000	0	100,000	
		100,000	0	100,000	01 시설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성립전예산] 30,000,000원(성립전예산)+70,000,000원 = 100,000 (국) 50,000 (시) 50,000
400 예비비등		434	0	434	
420 기타		434	0	434	
	802 반환금기타	434	0	434	
		217	0	217	01 국고보조금반환금

과목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사용잔액 216,310원 = 217
		217	0	217	02 시・도비보조금반환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사용잔액 216,310원 = 217

과목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4000 민방위비		625,264	472,291	152,973	[국 12,191 균 0 기 0] [시 30,432 구 582,641]
4100 민방위관리비		625,264	472,291	152,973	[국 12,191 균 0 기 0] [시 30,432 구 582,641]
4110 민방위관리		625,264	472,291	152,973	[국 12,191 균 0 기 0] [시 30,432 구 582,641]
4111 민방위관리		608,646	455,673	152,973	[국 12,191 균 0 기 0] [시 30,432 구 566,023]
100 경상예산		503,085	438,066	65,019	
110 인건비		37,517	37,082	435	
	101 인건비	37,517	37,082	435	
		37,517	37,082	435	08 기타직보수 ◎청원경찰 O급여 1,661,400원x1명x12월-기정19,624,000원 = 313 O정근수당 19,937,000원x0.9/12-기정1,472,000원 = 24 O명절휴가비 19,937,000원x1.2/12-기정1,963,000원 = 31 O가계지원비 19,937,000원x2/12-기정3,271,000원 = 52

과목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연가보상비 19,937,000원x17/360-기정927,000원 = 15
120 경상적경비		465,568	400,984	64,584	
	301 일반보상금	392,840	328,256	64,584	
		391,940	327,356	64,584	09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봉급 80,000원x130명x12월-기정101,400,000원 = 23,400 ◎교통비 2,000원x130명x22일x12월-기정61,776,000원 = 6,864 ◎중식비 5,000원x130명x22일x12월-기정137,280,000원 = 34,320
200 사업예산		75,067	17,607	57,460	[국 12,191 균 0 기 0] [시 30,432 구 32,444]
210 보조사업		75,067	17,607	57,460	[국 12,191 균 0 기 0] [시 30,432 구 32,444]
	201 일반운영비	6,980	0	6,980	
		6,980	0	6,980	01 일반운영비 ◎비상대피시설유지관리 1,980,000원 = 1,980 (시) 990 (구) 990

과목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예산액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산출기초		
					◎비상급수시설유지관리	5,000,000원 =	5,000
						(시)	2,500
						(구)	2,500
	401 시설비및부대비	30,000	0	30,000			
		30,000	0	30,000	01 시설비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	30,000,000원 =	30,000
						(국)	9,000
						(시)	10,050
						(구)	10,950
	405 자산취득비	20,480	0	20,480			
		20,480	0	20,48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방독면 정화통 구입	16,480,000원 =	16,480
						(시)	8,240
						(구)	8,240
					◎지역민방위 장비 구입	4,000,000원 =	4,000
						(시)	2,000
						(구)	2,000
400 예비비등		30,494	0	30,494			
420 기타		30,494	0	30,494			

과목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802 반환금기타	30,494	0	30,494	
		317	0	317	01 국고보조금반환금
					◎민방위분야 사용잔액 316,260원 = 317
		30,177	0	30,177	02 시・도비보조금반환금
					◎방독면구입 사용잔액 29,238,120원 = 29,239
					◎민방위분야 사용잔액 937,960원 = 938

장:(5000)지원및기타경 관:(5400)예비비 항:(5410)예비비 세항:(5411)예비비 세세항:(410)예비비 [남구본청][단위:천원]

과목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5000 지원및기타경비		2,871,749	1,649,440	1,222,309	
5400 예비비		2,871,749	1,649,440	1,222,309	
5410 예비비		2,871,749	1,649,440	1,222,309	
5411 예비비		2,871,749	1,649,440	1,222,309	
400 예비비등		2,871,749	1,649,440	1,222,309	
410 예비비		2,871,749	1,649,440	1,222,309	
	801 예비비	2,871,749	1,649,440	1,222,309	◎예비비 2,871,749,000원-기정1,649,440,000원 = 1,222,309
세출합계		133,350,344	126,467,019	6,883,325	

과목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1000 일반행정비		8,415,096	8,446,655	△31,559	
1200 일반행정비		8,415,096	8,446,655	△31,559	
1230 자치행정		8,415,096	8,446,655	△31,559	
1234 동정관리		8,415,096	8,446,655	△31,559	
100 경상예산		8,288,916	8,327,755	△38,839	
110 인건비		5,182,452	5,221,291	△38,839	
	101 인건비	5,182,452	5,221,291	△38,839	
		2,891,676	2,952,023	△60,347	01 기본급 ◎봉급[138명] O동장(28호봉) 2,867,700원x14명x12월-기정474,180,000원 = 7,594 O6급(18호봉) 2,171,800원x20명x12월-기정513,024,000원 = 8,208 O7급(14호봉) 1,783,900원x32명x12월-기정674,228,000원 = 10,790 O8급(6호봉)

과목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1,192,200원x38명x12월-기정535,071,000원	=	8,573
					○9급(3호봉) 903,300원x21명x12월-기정224,054,000원	=	3,578
					○기능9급(15호봉) 1,478,400원x13명x12월-기정226,996,000원	=	3,635
					◎정근수당 2,689,928,400원x0.9/12-기정198,567,000원	=	3,178
					◎처우개선비 0원-기정105,903,000원	=	△105,903
		980,204	969,996	10,208	02 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중학생 49,620원x10명x4회-기정1,928,000원	=	57
					○고등학생 401,040원x12명x4회-기정18,699,000원	=	551
					◎육아휴직수당 500,000원x8명x12월-기정38,400,000원	=	9,600
		268,993	264,756	4,237	05 명절휴가비		
					◎명절휴가비 2,689,928,400원x120%/12월-기정264,756,000원	=	4,237

과목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448,322	441,259	7,063	06 가계지원비 ◎가계지원비 2,689,928,400원x200%/12월-기정441,259,000원 = 7,063
200 사업예산		126,180	118,900	7,280	
220 자체사업		126,180	118,900	7,280	
	405 자산취득비	14,980	7,700	7,280	
		14,980	7,700	7,28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무거동 마을문고 부족물품 구입 O원탁열람석 220,000원x4개 = 880 O책상 150,000원x1대 = 150 O의자 45,000원x50개 = 2,250 ◎옥동 주민자치센터 3층 대회의실 부족물품 구입 O책상 155,000원x20개 = 3,100 O의자 45,000원x20개 = 900

장:(1000)일반행정비 관:(1200)일반행정비 항:(1230)자치행정 세항:(1234)동정관리 세세항:(220)자체사업 [남구동][단위:천원]

과목 장.관.항.세항.세세항	목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산출기초
세출합계		8,415,096	8,446,655	△31,559	
세출총계		141,765,440	134,913,674	6,851,766	